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분류 (안)

2009. 12.



일 러 두 기

- 본 분류(안)은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대한 업종 및 품목을 구체화한 것임
- 본 분류(안)은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에 대한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이를 활용하여 부처 및 기관특성에 맞는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분류기준으로 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표준산업분류(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008. 2. 1 시행)와 HS코드를 사용하였음

목 차

< 녹색기술 산업 >

1. 신재생에너지	6
1-1. 태양전지	7
1-2. 연료전지	9
1-3. 해양바이오	11
1-4. 해양에너지	13
1-5. 폐자원에너지	15
1-6. 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	17
1-7.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	19
1-8. 청정석탄에너지	21
2. 탄소저감에너지	23
2-1.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24
2-2. 원전 플랜트	26
3. 고도물처리	28
3-1.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29
3-2.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31
3-3. 친환경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33
3-4. 먹는샘물	35
3-5. 해양심층수	37
3-6. 지속가능 물환경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	39
4. LED응용	42

목 차

5. 그린수송시스템	45
5-1. 그린카	46
5-2. 선박·해양시스템	48
5-3. 첨단철도	50
6. 첨단그린도시	52
6-1. U-City S/W	53
6-2. U-City IT H/W	55
6-3. U-City IT 융합 H/W	57
6-4.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59
6-5. GIS	61
6-6. 그린홈	63
< 첨단융합산업 >	
7. 방송통신융합산업	66
7-1.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67
7-2. 차세대 무선통신	69
7-3. 방송통신미디어	71
8. IT융합시스템	73
8-1. IT융합	74
8-2. RFID/USN	76
8-3. 차세대 반도체	78
8-4. 차세대 디스플레이	80
9. 로봇 응용	80

목 차

10. 신소재 · 나노융합	85
10-1.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86
10-2. Ionic Liquid(IL) 소재	88
10-3. 나노탄소 융합소재	90
10-4. 기능성 나노 필름	92
10-5.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94
11. 바이오제약(자원) · 의료기기	96
11-1. 바이오 의약품	97
11-2. 바이오자원 · 신소재 · 장기	100
11-3.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103
11-4. 메디 · 바이오 진단시스템	106
11-5.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109
11-6.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112
12. 고부가 식품산업	115
< 고부가 서비스 산업 >	
13. 글로벌 헬스케어	120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124
15. 녹색금융	127
16. 콘텐츠 · 소프트웨어	129
16-1. 콘텐츠	130
16-2. 소프트웨어	132
17. MICE · 융합관광	135
17-1. MICE	136
17-2. 생태관광	138

I

녹색기술 산업

1. 신재생에너지

- 1-1) 태양전지
- 1-2) 연료전지
- 1-3) 해양바이오
- 1-4) 해양에너지
- 1-5) 폐자원에너지
- 1-6) 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
- 1-7)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
- 1-8) 청정석탄에너지

□ 개념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 전지 산업

□ 대표품목

결정질 실리콘, 실리콘 박막, CIGS 박막, 염료감응, 유기 태양전지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0129(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612(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C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F42499(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C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2804(수소·희(稀)가스 및 기타 비(非)금속원소), 2805(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 금속, 스칸듐과 이트륨 및 수은), 8541.40.9010(광전도 셀), 8541.40.9020(광전지(태양전지, 포토다이오드,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를 포함))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및 전략로드맵에 따른 15대 그린에너지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GCC, 전력IT, 초전도, 에너지저장, LED조명, 청정연료, CCS, 에너지절약형건물, 소형열병합, 원자력, 그린카, 히트펌프 장치 및 관련 부품소재 개발, 제조 영위기업
- 차세대 박막태양전지 및 3세대 태양전지 관련 소재 및 소자, 장치제조, 주변장치, 시스템 설계, 설치, 유지관리 관련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상기 대상기업 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벤처투자 참여기업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준용
 - * 관련 법·제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 제1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2)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02-2100-6813)

□ 개념

연료중의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효율, 친환경 미래 발전시스템 산업

□ 대표품목

건물용PEMFC, 분산발전용MCFC, 건물용/분산발전용SOFC, IGFC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2620(촉전지 침적물), 2824(이산화연, PbO₂), 2825(수산화니켈, 산화제이니켈), 78(연-안티모니 합금), 8506(일차전지), 8507(촉전지), 8548(일차전지 및 촉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촉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및 전략로드맵에 따른 15대 그린에너지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GCC, 전력IT, 초전도, 에너지저장, LED조명, 청정연료, CCS, 에너지절약형건물, 소형열병합, 원자력, 그린카, 히트펌프 장치 및 관련 부품소재 개발, 제조 영위기업
-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관련 소재 및 소자, 장치제조, 주변장치, 시스템 설계, 설치, 유지관리 관련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상기 대상기업 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벤처투자 참여기업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준용

* 관련 법·제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 제1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2)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02-2100-6813)

□ 개념

해조류, 해양미세조류 등으로부터 환경친화적인 바이오 연료를 제조하는 산업

□ 대표품목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BtL(Biomass to Liquid)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0119(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0499(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1212.20.6010(우뭇가사리-냉동한 것), 1212.20.6090(우뭇가사리-기타), 2804.10.0000(수소), 2905.11.0000(메탄올(메틸알코올)), 2905.13.0000(부탄올), 2905.31.0000(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2905.32.0000(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2942.00(기타 유기화합물), 8479(발효기, 압착기), 8419(증류기), 8421(여과기)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및 전략로드맵에 따른 15대 그린에너지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GCC, 전력IT, 초전도, 에너지저장, LED조명, 청정연료, CCS, 에너지절약형건물, 소형열병합, 원자력, 그린카, 히트펌프 장치 및 관련 부품소재 개발, 제조 영위기업
- 해양바이오연료 관련 소재 및 소자, 장치제조, 주변장치, 시스템 설계, 설치, 유지관리 관련기업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과 관련된 해조류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해조류바이오매스 에너지화, 해조류 대량생산 및 자동회수시설 생산, 해조류바이오에너지 부산물을 활용 식품·의학·화학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상기 대상기업 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벤처투자 참여기업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준용
 - * 관련 법·제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 제1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2)
- 국토해양부 해양개발과 (02-2110-8458)
-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02-500-2441)

□ 개념

해양의 조력, 조류, 파력 및 해수온도차에너지를 전기·열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및 설치구조물을 제조하는 산업

□ 대표품목

- 조력발전 : 수차, 발전기, 브레이크시스템, 전력 변환장치, 변압기, 수문, 방조제, 통선갑문
- 조류발전 : 수차, 발전기, 브레이크시스템, 전력 변환장치, 변압기, 지지구조물
- 파력발전 : 파력변환 운동부유체, 유압장치, 터빈, 전력제어기, 발전기, 변압기
- 해수온도차 : 해수 취·배수관, 냉·난방 장치, 열교환기, 온도차발전장치, 전력변환장치, 변압기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81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C2911(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C2912(유압기기 제조업), C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C2511(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C3111(선박 건조업), D3530(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F4122(토목시설물 건설업), F4213(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F4220(건물설비 설치공사업), F4231(전기공사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410(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8413(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501(발전기와 전동기), 8502(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4(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8537(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 8907(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및 전략로드맵에 따른 15대 그린에너지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GCC, 전력IT, 초전도, 에너지저장, LED조명, 청정연료, CCS, 에너지절약형건물, 소형열병합, 원자력, 그린카, 히트펌프 장치 및 관련 부품소재 개발, 제조 영위기업
- 해양에너지 관련 소재 및 소자, 장치제조, 주변장치, 시스템 설계, 설치, 유지관리 관련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상기 대상기업 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벤처투자 참여기업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준용
 - * 관련 법·제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 제1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문의처 / 담당자

- 국토해양부 해양개발과 (02-2110-8458)

□ 개념

가연성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및 음폐수,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으로부터 친환경적인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 대표품목

고분자폐자원에서부터 석유대체연료 생산, 가연성폐자원에서부터 고부가가치 에너지매체(energy carrier) 생산, 유기성폐자원에서부터 고부가가치 에너지매체 생산, 저탄소 녹색마을(마을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자립 시스템) 패키지화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0121(산업용 가스제조업), C33999(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E3701(하수 및 폐수처리업), E3702(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E38210(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E38230(건설폐기물처리업), F41224(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M72122(환경컨설팅 및 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3825.10.0000(생활폐기물), 3825.20.0000(하수찌꺼기), 4401.30.0000(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과 관련된 폐자원 에너지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매립가스 자원화, 소각여열 활용 등을 영위하는 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상기 대상기업 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준용

* 관련 법·제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 제1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2)
- 환경부 폐기물에너지과 (02-2110-7727)

□ 개념

비식량 섬유질계 바이오에너지작물, 유지작물, 농산부산물 등 바이오매스 자원 및 가축분뇨로부터 자원화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 대표품목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신품종, 비식량 섬유질계 에너지작물, 바이오에너지 작물 형질전환체, 농산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기타 중간산물, 고효율 당화효소, 가축분뇨 유래 바이오가스, 고품연료, 저탄소 녹색마을(마을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자립 시스템) 패키지화

* 바이오연료 생산공정 플랜트, 고효율 발효공정 플랜트, 가축분뇨 연료 생산용 플랜트,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A01110(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A01140(기타 작물 재배업), C20119(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0499(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E3702(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업), F41225(산업플랜트 건설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10류(곡물), 1207(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14류(기타식물성 생산품), 15류(동식물성유지), 1518(동식물성유지-비식용), 2905(알코올), 8479(발효기), 8421(여과기), 8404.10(보일러용 부속기기), 8501(전동기와 발전기), 8502(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농산업 친환경 바이오매스 작물(유채, 갈대 등)을 생산하는 영농단체 또는 기업
- 바이오알코올, 바이오디젤 생산업,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과 관련된 가축분뇨 및 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바이오에너지 관련 부품소재 장치제조, 시스템 설계·설치·유지관련 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상기 대상기업 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준용
 - * 관련 법·제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 제1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문의처 / 담당자

-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02-500-2441)

□ 개념

폐목재, 톱밥, 수피, 입목 등 임산물을 톱밥으로 분쇄 및 압축하여 친환경적인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 대표품목

목재폐기물·톱밥 등 산림부산물을 분쇄, 건조, 열성형과정을 거쳐 목재펠릿으로 제조하여 농산촌의 친환경에너지 대체연료로 보급하고, 동 펠릿을 연소하여 열에너지를 발생하는 보일러 등 제조시설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A02040(임업 관련 서비스업), C16299(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C25121(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4401.30.0000(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8403.10(보일러)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과 관련된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산림바이오매스(펠릿) 친환경 연료화를 위한 보일러 등 연소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 임지로부터 바이오매스 생산 및 공급 회사에 대상 기업, 목재펠릿등 고품 바이오 연료 생산 및 이용 설비 제조 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상기 대상기업 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벤처투자 참여기업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준용

* 관련 법·제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 제1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문의처 / 담당자

○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02-500-2441)

□ 개념

저급탄 원료의 무공해 가스화 기술로 생산된 합성가스를 CO2 저감 공정을 통해 청정 액화연료(경유 등), 청정가스, 메탄올, Naphtha 등 다양한 화학연료로 제조하는 산업

□ 대표품목

저등급탄의 고품위화, 친환경 가스화, 합성가스 정제, 합성가스 활용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0119(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2702(갈탄), 2905.11.0000(메탄올(메틸알코올)), 2905.31.0000(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2905.32.0000(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8414(가압, 가열 기능의 반응기)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및 전략로드맵에 따른 15대 그린에너지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GCC, 전력IT, 초전도, 에너지저장, LED조명, 청정연료, CCS, 에너지절약형건물, 소형열병합, 원자력, 그린카, 히트펌프 장치 및 관련 부품소재 개발, 제조 영위기업
- 청정석탄에너지 관련 소재 및 소자, 장치제조, 주변장치, 시스템 설계, 설치, 유지관리 관련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상기 대상기업 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벤처투자 참여기업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준용
 - * 관련 법·제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 제1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2)

2. 탄소저감에너지

2-1)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CCS)

2-2) 원전 플랜트

□ 개념

기후변화협약 대비 지구 온난화 대응기술로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과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자원화를 포함하는 산업

□ 대표품목

연소배가스 CO₂ 분리플랜트, 석탄가스화 CO₂ 분리플랜트, 순산소연소 CO₂ 분리플랜트, CO₂ 수송선, CO₂ 저장 플랜트, CO₂ 이용 유용물질 생산 플랜트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B05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B0801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C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2413(철강관 제조업), C2912(유압기기 제조업), C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C2917(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C311(선박 및 보트 제조업), D352(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F41225(산업플랜트 건설업), M721(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M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404.10.4000(가스회수기), 3907.40.0000(폴리카보네이트), 8421.39.9010(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청정기)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및 전략로드맵에 따른 15대 그린에너지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GCC, 전력IT, 초전도, 에너지저장, LED조명, 청정연료, CCS, 에너지절약형건물, 소형열병합, 원자력, 그린카, 히트펌프 장치 및 관련 부품소재 개발, 제조 영위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상기 대상기업 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
- 관련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료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 우선 고려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 문의처 / 담당자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팀 (02-2210-5645)○ 교육과학기술부 거대과학협력과 (02-2100-6732)○ 국토해양부 연구개발과 (02-2110-8129) |
|---|

2-2 탄소저감에너지-원전 플랜트

□ 개념

상용원전의 일부 미자립 기술 국산화 및 독자적 해외진출이 가능한 대용량 수출노형 개발

□ 대표품목

개량형 OPR1000/APR1400, 신형원전(APR+), 스마트 원자로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7216(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C281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C2912(유압기기 제조업), C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C2915(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D35111(원자력 발전업), F41225(산업플랜트 건설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401(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및 전략로드맵에 따른 15대 그린에너지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GCC, 전력IT, 초전도, 에너지저장, LED조명, 청정연료, CCS, 에너지절약형건물, 소형열병합, 원자력, 그린카, 히트펌프 장치 및 관련 부품소재 개발, 제조 영위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상기 대상기업 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02-2110-4879)
- 교육과학기술부 거대과학협력과 (02-2100-6732)
- 국토해양부 연구개발과 (02-2110-8129)

3. 고도물처리

3-1)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3-2)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3-3) 친환경대체용수 확보

3-4) 먹는샘물

3-5) 해양심층수

3-6) 지속가능 물환경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

□ 개념

막여과(Membrane Filtration)란 막(Membrane)을 여재로 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 공정

□ 대표품목

역삼투막(RO; Reverse Osmosis Membrane), 나노여과막(NF; Nanofiltration Membrane), 한외여과막(UF; Ultrafiltration Membrane), 정밀여과막(MF; Microfiltration Membrane), 가압식 막여과 정수처리시스템, 침지식 막여과 정수처리시스템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9175(액체여과기 제조업), D3601(생활용수 공급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421.21.1000(정수용 필터), 8421.29.2000(Membrane Element), 5911.90.0000(Hollow Fiber Membrane)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분리막 제조, 막여과 정수처리시스템 설계 및 설치 관련 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상기 대상기업 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
 -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환경부)
-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 및 한외여과 막모듈 기술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 수도용 역삼투 막모듈 및 나노여과 막모듈 기술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 문의처 / 담당자

-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02-2110-6905)

□ 개념

수돗물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 중 유해성 물질의 용출(溶出)로부터 위생적으로 안전함을 확보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 대표품목

펌프류, 밸브류, 파이프(철계열 및 비철계열)류, 유량계류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2211(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제조업), C2413(철강관제조업), C2422(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C27214(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C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3917(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3917.20(경질의 관·파이프 및 호스), 3917.31(연질(軟質)의 관·파이프 및 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에 한한다]), 7303.00(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4(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411(동제의 관), 8481(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9026(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생산제품이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 여부
- 국내·외 특허 출원 실적(수도용 자재 및 제품, 기술로)
- 해외(미국, 일본, 유럽)로 수출실적 여부
 - 최근 3년이내 미국, 일본, 유럽으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 ☞ 미국, 일본, 유럽에서 설정하고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관리 기준을 통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 여부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해당기술을 개발 또는 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벤처투자 참여기업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관련 법·제도

- 수도법 (제18조제1항)
-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①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물에 접촉하는 자재나 제품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08.5.2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 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7.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②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 문의처 / 담당자

-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02-2110-6905)

□ 개념

하수, 폐수를 필요 수질로 처리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기술

□ 대표품목

역삼투막(RO; Reverse Osmosis Membrane), 나노여과막(NF; Nanofiltration Membrane), 한외여과막(UF; Ultrafiltration Membrane), 정밀여과막(MF; Microfiltration Membrane), MBR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A01411(농업용수 공급), C29175(액체 여과기 제조업), D3601(생활용수 공급업), D3602(산업용수 공급업), E3701(하수 및 폐수 처리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421.21.1000(정수용 필터), 8421.29.2000(Membrane Element), 5911.90.0000(Hollow Fiber Membrane)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하,폐수 재이용 시스템 설계 및 설치 관련 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상기 대상기업 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
 -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 최근 3년 이내 벤처투자 참여기업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관련 법·제도

- 하수도법 제5조
- 하수도법 제21조
- 하수도법 제26조
-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 및 한외여과 막모듈 기술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 수도용 역삼투 막모듈 및 나노여과 막모듈 기술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 문의처 / 담당자

-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02-2110-6905)

□ 개념

먹는샘물 산업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물 산업

- *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

□ 대표품목

먹는샘물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11202(생수생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2201.10.0000(광수와 탄산수)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 먹는샘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현재 법령개정중)
- 해외(미국, 일본, 유럽 등) 수출실적 여부
 - 최근 3년이내 미국, 일본, 유럽 및 동남아 등으로 먹는샘물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 가뭄, 홍수 등 재난에 따른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 등의 실적이 있는 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 여부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해당기술을 개발 또는 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기업
 - 최근 3년이내 벤처투자 참여기업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생산제품이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 먹는샘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현재 법령개정중)

◆ 문의처 / 담당자

-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02-2110-6905)

□ 개념

청정 해수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취수 및 탈염 등의 과정을 거쳐 먹는물, 음료, 주류, 식품, 농수산물, 그리고 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미래 산업

□ 대표품목

먹는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품(소금, 두부, 김치, 제과 등), 해양심층수로 제배된 농수산물,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한 화장품, 기능성음료, 주류, 해수냉난방시스템, 온도차발전시스템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11202(생수 생산업), C1111(알콜음료 제조업), C10(식료품 제조업), C2043(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D35119(기타 발전업), D353(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2201(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2202(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2207(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 2208(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에 한한다),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203(맥주), 2501(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및 해수), 2005.99.1000(김치), 2106.10.1000(두부), 3303(향수 및 화장수), 3304(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3401(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해양심층수 개발업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서 언급된 해양심층수 이용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취·급·배수시설 건설업
- 해양심층수 개발 해역의 환경관리업
- 해양심층수이용 지역 냉난방 공급업
- 해양심층수이용 온도차 발전 전력 생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상기 대상기업 중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최근 5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벤처투자 참여기업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 관련 법 제도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문의처 / 담당자

-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6313)

□ 개념

- 고도성장시기의 경제발전 위주의 국토개발로 인해 훼손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보전시키기 위한 실용화 상용화 위주의 기술개발
- 우리나라 및 전 세계의 이상기후 영향에 의한 생태계 변화에 적응하여 지속가능한 수생태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21세기 물 환경을 구축

□ 대표품목

수중부유식 어류 산란장, 어족보호용 인공어초, 어족보호용 지하산란장치, 굽치형 습지, 둠벙형 습지, 댐용 어도, 생물 이동통로, 단위서식처, 보 및 낙차공, 고수부지 조성기술, 하안·하상 조성기술, 자연형 하상공법(여울 및 소 조성 공법), 하도육역화 관리기술(물골 및 수제공법), 일체형 하천 호안블럭, 섬유혼합다공성 Soil 블록, 하안 침식방지형 방틀, 생태유지용수 저장조, 식생매트, 수질정화 시설, 하상여과, 토양여과, 살조물질, 합류식 우수관 월류수 처리장치, 분리식우수관 월류수 처리장치, 농촌지역 토양유실방지 및 유사저감 기술(장치), LID 장치, 탁수차단 기술(장치), 여과필터를 이용한 수처리장치, 수질정화용 하천협잡물 제거장치, 수처리시설의 전처리장치, 고도 수처리 기술, 하수 재이용 기술, 생태복원용수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정수역 수질정화시설, 빗물차집 및 저류탱크 제품, 보도/가로수 등에 적용 가능한 침투/저류 시스템, 조경수림 조성, 수변녹지 및 생태벨트 조성 설계 및 시공기술, 식재기반 개량재, 수목이식용 비료, 수변녹지용 포트수목, 제방녹화용 식물매트, 야생동물이동 유도웬스, 야생동물 이동통로, 물이끼류, 습지식물류, 습지토양, 무기토양, 이탄습지 조성, 수질 및 생태관련 계측기, VOC측정장치, 중금속측정장치, 조류독소측정장치, 수생태 모니터링용 DNA-chip (위해성 미생물용 및 조류예보제 대체용), 온라인 실시간 독성 모니터링 장치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A01123(종자 및 묘목생산업), A02011(임업용 종묘생산업), A02012(육림업), A02020(벌목업), A02040(임업관련 서비스업), B07112(고령토 및 기타 점토 광업), B07123(모래 및 자갈 채취업), B13921(끈 및 로프 제조업), B16103(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처리업), B23231(점토 벽돌 및 유사 비내화 요업 제품 제조), C13219(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C139(기타섬유제품제조업), C2011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0302(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C2511(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C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C33999(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C41223(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C41226(조경건설업), C41229(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C46119(기타 토목시설물 건설관련 전문공사업), E37011(하수처리업), E39009(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41226(조경건설업), F41229(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F41223(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F42121(토공 사업), G46202(종자 및 묘목 도매업), M72122(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N742(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0(조경 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0106(미생물 배양체), 0602(초본식물), 060410.0000(이끼와 지의), 2505(천연모래), 2516(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 2517(자갈·왕자갈·쇄석·싱글과 플린트,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 타르매카담 및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파편상·분상으로 한 것), 2523(포틀랜드 시멘트·알루미나시멘트·슬랙시멘트·수퍼설페이트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 시멘트(착색하거나 클링커형태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09(오산화인과 인산 및 폴리인산), 2834(아질산염과 질산염), 2901.29(기타), 3214101060(고무를 기제로 한 것), 3405(신발·가구·마루·자동차 차체·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연마페이스트·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지·워딩·펠트·부직포·셀룰라 플라스틱 또는 셀룰라 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903.30.0000(ABS 수지), 3917(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4402(목탄), 4404(후프우드·쪄낸말뚝, 뽕죽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 5407(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7223(스테인리스강의 선), 7229(기타 합금강의 선), 7303(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4(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한다)), 7308(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 교량, 수문,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326(철강제의 기타제품), 7610.90.1000(구조물), 8429.59(굴착기), 8435(농축기), 9027.80(기타의 기기)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환경산업기술원의 생태하천 복원관련 '수생태복원 사업단'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 * 생태하천 설계 및 시공, 모니터링, 유지관리가 가능한 기업으로 하천관련 기술 및 일반 토목시공 능력이 우수한 기업
- 환경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계획(2009.01)」의 '10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중 생물자원 활용 및 복원기술 관련 산업에 관련되는 기술을 가진 기업
- 환경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계획(2009.01)」의 '10대 환경 산업육성' 정책에 따라 생물 자원 및 생태관광 산업 관련 기술을 영위하는 기업
- 환경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계획(2009.01)」의 '남북환경 협력사업'의 DMZ 생태공원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 6대 녹색기술산업과 관련된 「고도물처리」 및 전략로드맵에 따른 생태하천조성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생태환경복원 및 조경 설계 및 시공, 생태하천복원 관련 신기술 보유기업
-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등 환경산업 발전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속가능 물환경 조성 기술의 신성장 동력화」 및 전략로드맵에 따른 통합 수계 관리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수질 중 유해 물질 - VOC, 중금속, 조류독소 등- 분석시스템 제조 관련 부품소재 개발, 주변장치, 시스템 설계, 제품생산, 설치, 유지관리 관련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상기 대상기업 중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
 - 관련기술의 시험시공으로 그 기술의 효과성이 입증된 실적(특허 등) 보유 업체
 - 국가 연구개발 시범사업 참여업체
- 이노비즈 인증 중소기업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 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우대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환경부 관련 등록기업 준용
 - * 관련 법 · 제도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9335호](제5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9조, 제18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544호](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278호](제6조, 제33조의 2)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97호](제6조의 2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590호](제16조, 17조, 18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36호](제22조, 제93조)
 - 습지보전법(제17조1항, 제18조)

◆ 문의처 / 담당자

-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02-2110-6905)

4. LED 응용

□ 개념

에피 · 칩 · 패키징 등 반도체 공정산업과 어플리케이션(조명) 산업

□ 대표품목

- Eco LED : 고효율 RGB LED, 고방열 고집적 패키지, 대용량 LED 양산장비
- LED 스마트 모듈 : 자동차/선박, 의료/환경, 바이오/생태조절용 모듈/시스템
- LED 감성/ 웰빙 조명 : 백색 LED 웰빙조명기기, 풀칼라 LED 감성조명기기, 지능형 LED 도로/도시조명기기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C26120(다이오드, TR, 유사 반도체 소자), C26219(기타 평판디스플레이), C26221(인쇄회로기관 제조업), C26222(전자부품실장기관 제조업), C26322(컴퓨터 모니터), C28113(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C28423(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C29271(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541.40.1000(칩, 다이오드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8541.40.2090(기타 (발광다이오드 중 레이저소자 제외)), 8531.80(기타의 기기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가 결합된 표시반)), 8543.90.9010(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 8512(전기식의 조명, 신호용 기기), 9405(램프와 조명기구)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LED조명용 모듈제조업체
- LED조명 제어용 안정기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 LED 칩 제조업체
- 농어업용 LED 제조업체
 - * LED 관련 표준산업 분류코드 없음
- 관련 인증 및 신고제도 대상기업
 - LED 조명제품 EK인증
 - LED 조명제품 KS인증심사 준비업체
 - LED 조명제품 해외인증 준비업체
- 기타
 - 정부 발주 LED 조명교체시범건물사업 및 LED조명 보급사업 참여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LED조명용 모듈제조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안정기 및 전자회로 제품 제조업체(부품 국산화율 80% 이상)
- 광효율, 역률, THD 제품시험 결과 우수 업체
 - 광효율

구분	KS기준	고효율기자재 인증 (08.8.20)	고효율기자재 인증 (보급)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lm/w)	40~50	50~60	45~54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lm/w)	45~55	40~50	45~54
매입형 LED 등기구 (lm/w)	40~65	-	-
LED 비상 유도 등기구(cd/m ²)	상용시 : 150~1,000 비상시 : 100 이상	최동	휘도는 동일 하나 측정거리 표시면의 4배
CRI	70	75	70

* 참고사항

-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백열전구 대체용 LED램프
-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할로겐전구 대체용 LED램프
- 매입형 LED 등기구 : LED 다운라이트
 - 역률 : 0.9이상 (5W 이하 0.85 이상)
 - THD : 30%이하 (5W 이하 40% 이하)
- 직접생산증명원 보유업체(필수사항)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채낚기용 LED 집어등 품질검증기준 (농림수산식품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정보전자산업과 (02-2110-5676)
-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02-500-2441)

5. 그린수송시스템

5-1) 그린카

5-2) 선박·해양시스템

5-3) 첨단철도

□ 개념

기존 내연기관 대비 효율이 높고 연비가 좋으며, 배출가스나 CO₂ 배출량이 적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산업

□ 대표품목

하이브리드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 그린카 공통핵심부품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C282(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C29172(공기조화장치 제조업), C29174(기체 여과기 제조업), C29175(액체 여과기 제조업), C30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C30310(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C30320(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C30391(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C30392(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C30399(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C32011(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C2922(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2822.00.1091(2차전지 제조용의 것), 3801.10.1000(2차전지 제조용의 것), 3921.19.1010(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3921.19.2010(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8702(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8703(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 8708.92.0000(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자동차(부품)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 자동차에너지효율향상사업
 - 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부품·소재신뢰성향상사업
 - 청정생산/표준화기술개발사업 등
- 관련 인증 및 신고제도 대상기업
 - ISO/TS 16949, ISO 14001, Single PPM 인증업체 등 품질/환경 인증기업
- 기타
 - 세계 일류상품 및 일류기업에 선정된 기업에 가점 부여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매출액대비 수출금액 비중이 높은 기업
-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 노사협력 우수 사례기업

< 지원대상 우선순위 >

- ① 기술개발이 시급한 그린카 및 고부가가치 기술 연구기업
 - 미래 자동차시장 선점을 위한 PHEV 등 그린카 기술 개발기업
 -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관련 첨단 부품·소재의 국산화 기술 개발기업
 - 완성차업체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한 기업
- ② 파산시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에 영향이 큰 핵심·원천기술 보유기업
- ③ 성장잠재력 및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으로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02-2110-5635)

□ 개념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신개념 선박·해양 시스템과 해양레저선박/장비를 비롯한 유망 조선산업

□ 대표품목

미래형 친환경 선박, Extreme Ocean Plant, 레저보트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C2721(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C2922(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901.10.0000(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 및 각종의 페리보트), 8901.20.0000(탱커), 8901.30.0000(냉동선), 8901.90(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8905.10.0000(준설선), 8905.20(시추대 또는 작업대), 8905.90(기타(조명선, 발전선, 시추선, 부선거 등)), 8426(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조선해양(부품)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 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부품·소재신뢰성향상사업
 - 청정생산/표준화기술개발사업 등
- 관련 인증 및 신고제도 대상기업
 - ISO9001(품질), ISO14000(환경), OHSAS18001(보건) 등 품질/환경/보건 인증기업
- 기타
 - 세계 일류상품 및 일류기업에 선정된 기업에 가점 부여
 -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매출액대비 수출금액 비중이 높은 기업
-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 노사협력 우수 사례기업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02-2110-5635)

□ 개념

첨단철도차량산업(Electric & Machinery)이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철도차량,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을 포괄한 개념

□ 대표품목

차세대 고속철도, 무가선 하이브리드 저상트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31201,31202(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별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601(철도용기관차(외부전원 또는 축전지로 주행), 8602(기타의 철도용 기관차 및 탄수차), 8603(자주식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화차), 8605(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 등), 8607(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 8608(철도 또는 선로용 장치물 등)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첨단철도(부품)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 차세대동력분산형고속열차 시스템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시스템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 청정에너지열차 시스템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 기술자립형 경전철 시스템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 관련 개발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 부품·소재신뢰성향상사업
 - 청정생산/표준화기술개발사업 등
- 관련 인증 및 신고제도 대상기업
 - ISO9001(품질), ISO14000(환경), OHSAS18001(보건) 등 품질/환경/보건 인증기업
- 기타
 - 세계 일류상품 및 일류기업에 선정된 기업에 가점 부여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매출액대비 수출금액 비중이 높은 기업
-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 노사협력 우수 사례기업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국토해양부 철도차량기술과 (02-2110-8819)

6. 첨단그린도시

6-1) U-City S/W

6-2) U-City IT H/W

6-3) U-City IT 융합 H/W

6-4)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6-5) GIS

6-6) 그린홈

□ 개념

U-City S/W 산업은 첨단그린도시의 관리운영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과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통합플랫폼과 도시특성 및 시장특성에 따른 개별 서비스시스템S/W로 구분함

□ 대표품목

U-City통합플랫폼S/W, U-도시시설물관리시스템S/W, U-도시교통서비스시스템S/W, U-도시안전(방법,방재)서비스시스템S/W, U-도시물순환관리시스템S/W, U-도시탄소·에너지관리시스템S/W, U-도시환경관리시스템S/W, U-도시물류시스템S/W, U-도시행정지원(원격근무포함)시스템S/W, U-City통합미들웨어, U-City건설공정관리S/W 등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매체)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U-City 구축 및 운영에 따라, 도시정보수집, 전달, 가공, 제공 등에 관련된 모든 기업
 - U-City 정보수집기술 개발 분야
 - U-City 정보전달기술 개발 분야
 - U-City 정보가공기술 개발 분야
 - U-City 정보 및 서비스 제공기술 개발 분야 등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높은 업체
- 상기 대상기업 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벤처투자 참여기업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통합운영플랫폼 및 U-City단말과의 정보연동을 위한 상호연동기준 마련 및 인증제도 운영 예정

◆ 문의처 / 담당자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02-2110-8201)
- 국토해양부 연구개발과 (02-2110-8129)

□ 개념

U-City기반시설건설에 필요한 각종 IT장비 및 부품과 이에 포함된 시스템S/W를 제공하거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대표품목

U-City통합단말기, 미생물연료전지 기반 BOD센서, U-City 코어게이트웨이, U-City 무선 AP, U-City 센서네트워크 AP 등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0119(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642(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C2651(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C2612(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C26221(인쇄기관 제조업), C26222(전자부품 실장 제조업), C26299(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C26294(전자카드 제조업), C26429(무선통신장비 제조업), C2632(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517(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8525(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8471(PDA), 8517(중계기, 기지국), 8541(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2(전자집적회로), 8523.59.3000(프록시미터 카드 및 태그), 8471(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8420·8479·8517·8529·9027(RFID 관련 장비), 8543(기타의 전기기기), 8531(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U-City 구축 및 운영에 따라, 도시정보수집, 전달, 가공, 제공 등에 관련된 모든 기업
 - U-City 정보수집기술 개발 분야
 - U-City 정보전달기술 개발 분야
 - U-City 정보가공기술 개발 분야
 - U-City 정보 및 서비스 제공기술 개발 분야 등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높은 업체
- 상기 대상기업 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벤처투자 참여기업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통합운영플랫폼 및 U-City단말과의 정보연동을 위한 상호연동기준 마련 및 인증제도 운영 예정

◆ 문의처 / 담당자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02-2110-8201)
- 국토해양부 연구개발과 (02-2110-8129)

□ 개념

U-City기반시설건설에 필요한 지능형 건축자재, 지능형 토목자재(모듈)과 이에 포함된 시스템S/W를 제공하거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대표품목

지능형통풍방음벽, Water Curtain 방음벽, 지능형 벽체 모듈, 지능형 가로 바닥 모듈 등, 지능형 가로등, 지능형신호등, 미디어폴 등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222(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8423(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C2331(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C2399(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511(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6808(패널, 보드, 타일, 블록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810(시멘트제품, 콘크리트제품 또는 인조석제품), 7308(철강제의 구조물), 7610(알루미늄제의 구조물), 8512(전기식의 조명, 신호용 기기), 9405(램프와 조명기구)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U-City 구축 및 운영에 따라, 도시정보수집, 전달, 가공, 제공 등에 관련된 모든 기업
 - U-City 정보수집기술 개발 분야
 - U-City 정보전달기술 개발 분야
 - U-City 정보가공기술 개발 분야
 - U-City 정보 및 서비스 제공기술 개발 분야 등
-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은 기술 가점제도
 -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48호) 건설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2008. 9. 1일부터 개발실적 항목에서 2점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47-25, 2008.12.29)에서 “기술능력”에 건설신기술에 한해 PQ심사시 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 2점,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4점까지 가점할 수 있음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은 기업 우대
 -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제5항)
-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높은 업체
- 상기 대상기업 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업체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통합운영플랫폼 및 U-City단말과의 정보연동을 위한 상호연동기준 마련 및 인증제도 운영 예정

◆ 문의처 / 담당자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02-2110-8201)
- 국토해양부 연구개발과 (02-2110-8129)

□ 개념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첨단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하여 교통운영·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효율성·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미래지향적 신개념 교통체계

□ 대표품목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및 교통정보 제공단말기, 버스정보 시스템, Hi-Pass 등 전자요금지불 시스템 및 단말기, Smart-Highway 시스템 및 단말기,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및 단말기, 차세대 위성항행 시스템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6294(전자카드 제조업), C26299(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C26429(기타 무선통신 장비 제조업), C26519(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7215(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C28903(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J5822(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9(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J6399(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471(PDA), 8517(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매체), 8525(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8530(전기식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 8526(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 8608(기계식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 및 부분품), 9006(사진기, 사진용 섬광기구), 9013(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및 기타의 광학기기), 9029(속도계와 회전속도계), 9033(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ITS 표준인증, 품질인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3조, 제84조, 제85조)
- 교통신기술 지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103조)
- 신기술통합인증요령 (국토해양부고시 제2005-559호,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6호, 환경부고시 제2006-1호)

◆ 문의처 / 담당자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02-2110-8201)
- 국토해양부 연구개발과 (02-2110-8129)

□ 개념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

□ 대표품목

실시간 능동형 국토공간 시스템, 지능형 도시시설물 관리 시스템, 차세대 공간정보 융합시스템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18129(기타 인쇄관련 산업), C26429(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C28122(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F41229(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F42139(기타 시설물축조관련전문 공사업), G46510(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H52914(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J58119(기타 서적 출판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1210(유선통신업), J61220(무선통신업), J62010(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L68129(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M72111(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M72112(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M72121(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M72129(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921(측량업), M72923(지질조사 및 탐사업), M73909(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M72924(지도제작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4905(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4906(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의 것),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9014(방향탐지용 컴퍼스와 기타의 항행용 기기),9015(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기기(컴퍼스를 제외한다) 및 거리측정기)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지리공간정보의 구축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한 응용서비스를 컴퓨터와 기술인력이 결합하여 시장에서 지리공간정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GIS와 관련된 모든 기업
 - 지리공간정보 구축 분야
 - GIS 응용시스템 개발 분야
 - 지리공간정보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분야
 - GIS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분야
 - GIS 소프트웨어 판매 분야
 - GIS 하드웨어 기술개발 분야
 - GIS 하드웨어 판매 분야
 - GIS 컨설팅 및 검수감리 분야
 - GIS 교육 분야
- 기타
 - 정부 공공분야 GIS 확산·시범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업
 - *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舊)정보통신부 등
 - GIS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GIS 관련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기업
 - GIS 관련 정부/단체 수상 경력이 있는 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기존 주력산업 혹은 전통산업과 GIS 융복합 추진 실적이 있는 기업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 GIS 공유기반 시설 활용 실적을 보유한 기업

□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02-2110-8201)
- 국토해양부 연구개발과 (02-2110-8129)

□ 개념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절감 요소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저에너지·친환경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산업

□ 대표품목

외부환경 조절 시스템, 고효율 단열 시스템, 친환경 건축 재료, 고효율 설비 시스템, 건물통합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5111(창 및 관련제품 제조업), C28111(전동기 및 발전기제조업), C28112(변압기제조업), C29133(탭·밸브 및 유사장치제조업), C29176(열교환기제조업), C29294(주형 및 금형 제조업), C284(전구 및 조명장치제조업), C2851(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C264(통신 및 방송장비제조업), F4111(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F4112(아파트 건설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7308.30.0000(문·창문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7419.91.0000(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된 것), 8302.41.10(문 또는 창에 적합한 것), 8413.70.90.10(터빈펌프), 8413.70.90.20(블류트펌프), 8413.91.4000(원심펌프의 것), 8413.70.90.90(펌프기타), 8414.80.92.10(펌프사용동력이 74.6kW미만인 것), 8481.80.10.10(전기작동식인 것), 8481.80.10.30(기타자동제어식의 것), 8481.80.20(탭·코크와 트랩), 9025.90.11(온도센서), 8501.10.20(교류전동기), 8501.53.10(전동기출력이 375kW이하인 것), 8503.00.10(전동기의 것), 8503.00.20(발전기의 것과 발전세트의 것), 8501.53.10(발전기출력이 375kW이하인 것), 8501.53.20(발전기출력이 375kW초과 1500kW이하인 것), 8504.21.90.20(변압기용량이100kVA초과 650kVA이하인 것), 8504.22.90.10(변압기용량이 650kVA초과 1000kVA이하인 것), 8512.20.10(조명용기구), 9405.60.30(형광램프의 것), 7011.10.0000(전등용의 것), 8504.40.90.91(전기통신용기기의 것)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정부의 그린홈(공동주택) 보급사업 참여업체
- 에너지절약형 고효율자재 기술 개발 제조업체
- 신재생에너지의 원천기술 개발 제조업체
- 전기기기, 통신기기 및 에너지사용정보알림장치 원천기술 개발 업체
- 주택성능등급 1등급 주택
- 친환경인증제도 최우수등급 주택
- 관련인증 대상업체
 - 고효율기자재 인증 업체
 - LED조명제품 EK인증 업체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높은 업체
- 상기 대상기업 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이를 통해 획득한 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최근 3년 이내 상기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업체
-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 최근 3년 이내 벤처투자 참여기업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관련 법·제도

- 주택법 (제21조의2)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그린홈 성능 및 건설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예정)

◆ 문의처 / 담당자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02-2110-8201)
- 국토해양부 연구개발과 (02-2110-8129)

Ⅱ

첨단융합 산업

7. 방송통신 융합산업

7-1)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7-2) 차세대 무선통신

7-3) 방송통신미디어

□ 개념

실감 IPTV 등 신개념 융합서비스를 위한 융합 네트워크 인프라 및 플랫폼, 광대역 네트워크 서비스 및 홈 네트워크 시스템 등 포괄

□ 대표품목

융합 네트워킹 시스템, 융합 제어 플랫폼, 그린 저전력 지능형 액세스 시스템, 그린 광대역 초고속 전송 시스템, 융합 정보보호 시스템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6410(유선통신 장비 제조업), J61210(유선 통신업), J61291(통신 재 판매업), J61229(그외 기타 전기통신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3120(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F42321(일반 통신공사업), F42322(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26421(방송장비제조업), C2651(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652(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C26429(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517(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해당업종
 - 유선통신 및 홈네트워크 기기 제조업
 - 기간통신업 / 별정 통신업 / 부가 통신업
 -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 관련 인증 및 신고제도 대상기업
 - 대한민국 신기술(NET) 인증
 - 대한민국 신제품(NEP) 인증
 - 대한민국 신뢰성(R) 인증 등
- 기타
 - 정보통신미디어원천기술개발 사업 참여기업 등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차세대 네트워크와 연계된 융·복합 기술 보유 업체
- 차세대 네트워크(BcN, HN) 핵심기술 보유업체
- Giga인터넷 핵심기술 보유업체
- 저전력 네트워크 기술 및 정보보안 기술 개발 업체
- 방송통신 융합 네트워크 핵심 장비 및 부품 기술 보유 업체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과 (02-2110-4813)
-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총괄과 (02-750-2115)

□ 개념

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단말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

□ 대표품목

3GPP LTE시스템, WiBro Evolution시스템, 초고속 근거리 무선통신시스템, 융복합 무선 통신 단말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6422(이동전화기 제조업), C26429(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C26511(텔레비전 제조업), C26519(비디오 및 기타 영 무기 제조업), C26521(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C26529(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C2820(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3120(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J61220(무선통신업), J61291(통신 재판매업), J61229(그외 기타 전기통신업)

C26421(방송장비제조업), C2651(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652(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C26410(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기타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2822.00.1091(2차전지 제조용의 것), 3801.10.1000(2차전지 제조용의 것), 3921.19.1010(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3921.19.2010(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8517(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8525(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8471.30.0000(휴대용 자동자료 처리기계 ; PDA), 8529(부분품),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해당업종
 -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 무선폭출 및 기타 무선 통신업
 - 별정 통신업
 - 부가 통신업
 -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 관련 인증 및 신고제도 대상기업
 - 대한민국 신기술(NET) 인증 / 신제품(NEP) 인증 / 신뢰성(R) 인증 등
- 기타
 - 차세대네트워크 원천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등
 - 지식경제부 IT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등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차세대 이동통신과 타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기술 보유 업체
- 4G 및 5G 이동통신 핵심 기술 보유 업체
- 차세대 융·복합 단말과 연계한 핵심 부품 기술 보유 업체
- 융·복합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 업체

□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과 (02-2110-4813)
-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총괄과 (02-750-2115)

□ 개념

DTV, DMB, IPTV, 실감미디어 등의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 및 관련 장비 (3D입체영상 및 음향, 초고화질 등으로 사실감과 현장감을 증가시킨 차세대 방송 및 유무선/모바일 휴대 기반의 개인 참여형 고품질 IPTV 서비스 등을 포함)

□ 대표품목

- 실감DTV방송 : 3DTV, UHD TV, 차세대DMB, 실감DTV 콘텐츠 및 방송장비
- 차세대 IPTV : IPTV 헤드엔드 시스템, 모바일 IPTV 전송시스템, IPTV 서비스 플랫폼, 지능형 융복합 IPTV 단말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6421(방송장비 제조업), C26511(텔레비전 제조업), C26519(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6520(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제조업), J60110(라디오 방송업), J60210(지상파방송업), J60221(프로그램 공급업), J60222(유선방송업), J60229(위성 및 기타방송업), J59114(방송프로그램 제작업), J59130(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6410(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C26429(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8525(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8528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방송 장비 제조업
- 방송사업
 - 방송사업 / IPTV방송사업/ 기타 방송업
 -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 관련 인증 및 신고제도 대상 사업
 - 대한민국 신기술(NET) 인증/ 신제품(NEP) 인증 / 신뢰성(R) 인증 등
- 국가 연구개발 참여기업 등
 - 정보통신미디어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 참여기업 등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차세대 방송과 연계된 융·복합 기술 보유 업체
- 차세대 IPTV, DTV, 3DTV, DMB, UHDTV 등 핵심기술 보유업체
- 차세대 네트워크(BcN, HN) 및 Giga인터넷 핵심기술 보유업체
- 방송통신융합미디어 핵심 장비 및 부품 기술 보유 업체
- 융·복합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 업체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과 (02-2110-4813)
-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총괄과 (02-750-2115)

8. IT융합시스템

8-1) IT융합

8-2) RFID/USN

8-3) 차세대 반도체

8-4) 차세대 디스플레이

□ 개념

주력산업에 IT를 융합·접목하여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하고, IT 신산업을 창출하는 분야

□ 대표품목

- 지능형 그린자동차 : IT융합 그린전장 및 전동화 기술, IT융합 그린 주행 시스템 기술, IT융합 차량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반 기술, 차량 네트워킹 플랫폼, 차량 협력 주행 시스템, 자동 발렛 파킹
- DIGITAL 선박 : 선박내 통신인프라(SAN), 이동/위성통신 시스템(MoSIN), 지능형 항해정보 시스템(INIS)
- 웰페어 융합 플랫폼 : 헬스케어용 단말기를 위한 신호 처리 분석 시스템, 헬스케어용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시스템, 홈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 지능형 건물 관리 시스템, 웨어러블 시스템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C205(화학섬유 제조업), C271(의료용 기기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C313(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C3191(전투용 차량 제조업), F411(건물 건설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Q861(병원), J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4(기계류, 로봇포함), 85(전자기기류), 86(선박류), 87(자동차류), 88(항공기류), 89(선박류), 90(측정장비, 의료기기류)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02-2110-4793)
- 지식경제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02-2110-5686)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활용과 (02-2110-5158)

□ 개념

RFID와 USN 기술을 접목하여 정보 유통의 혁신적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RFID/USN 기기, 서비스 및 응용에 관련된 가치사슬 상의 모든 player를 포함한 산업

□ 대표품목

개별물품 인식 RFID, 광역 USN 통신시스템, 지능형 RFID/USN 미들웨어, 지능형 에너지 절감용 USN 시스템, 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 USN 시스템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C26120(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소자 제조업), C26221(인쇄기관 제조업), C26222(전자부품 실장 제조업), C26299(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C26294(전자카드 제조업), C26429(무선통신장비 제조업), C26329(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999(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523.59.3000(프록시미티 카드 및 태그), 8471(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8420·8479·8517·8529·9027(RFID 관련 장비), 8543(기타의 전기기기)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해당업종 : RFID 및 USN 관련 제품 제조, 서비스 제공 영위 기업

대분류	중분류	해당업종
RFID	H/W	Chip(Reader, Tag), 태그, 리더(고정형, 핸드헬드형)/라이터, 프린터 등
	S/W	미들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등
	SI 등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컨설팅 등
USN	H/W	센서, 센서노드, 싱크노드, 네트워크 장비 등
	S/W	미들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등
	SI 등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컨설팅 등

○ 관련 인증 및 신고제도 대상기업

- 국내에서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KCC(방송통신위원회) 형식 등록 기업,
- 국내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 획득 기업
 - H/W : RFID(모바일RFID) 표준적합성, 상호운영성, 성능시험
 - S/W : GS인증 (미들웨어 등)
-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 RFID/USN 기기를 수출하기 위한 국가별 인증 획득 기업
 - FCC(미국), CE(유럽), CCC(중국), PSE(일본), EPCIS(자율인증) 등

○ 기 타

- 정부 공공분야 RFID/USN 확산·시범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업
 - *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舊)정보통신부 등
- RFID/USN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 송도 u-IT클러스터 입주 선정 기업
- RFID/USN관련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기업
- RFID/USN관련 정부/협단체 수상 경력이 있는 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기존 주력산업 혹은 전통산업과 RFID/USN 융복합 추진 실적이 있는 기업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 RFID/USN 공유기반 시설 활용 실적을 보유한 기업

- RFID/USN센터(송도), RFID산업활성화지원센터(안산), 광양만권 u-IT연구소

□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02-2110-4793)

○ 지식경제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02-2110-5686)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활용과 (02-2110-5158)

개념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등의 전장 시스템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 소자로 시스템의 고성능·고기능화, 경박단소 및 저전력화를 특징으로 하는 분야

 대표품목

정보통신반도체, 친환경 절전형 전력반도체, 저전력 센서 반도체, 차세대메모리반도체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61(반도체 제조업), C29271(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C2922(가공공작기계 제조업)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541(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2(전자집적회로), 8543(기타의 전기기기), 8548(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 8456·8479·8424(반도체 제조장비 등)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02-2110-4793)
- 지식경제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02-2110-5686)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활용과 (02-2110-5158)

□ 개념

기기의 정보를 사용자(End user)에게 시각적으로 제공해 주는 화면표시장치

□ 대표품목

대화면 AMOLED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투명디스플레이, OLED 조명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621(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 C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C2922(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473.10(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522.90(기타), 8531(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 · 사이렌 · 표시반 ·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 8539(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8543(기타의 전기기기), 9001(광섬유와 광섬유다발), 9013.80(기타의 기기), 9013.90(부분품과 부속품), 9017.90(부분품과 부속품), 3701(평면플레이트(플라즈마용 등), 7005(플라즈마 디스플레이용 유리 등), 7006(제7003호 · 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로서 구부린 것 · 가장자리 가공한 것 · 조각한 것 · 구멍을 뚫은 것 · 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수출실적 우수 기업
 - 최근 2년간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 업체
- 기술력 있는 장비재료 기업
 - 최근 1년 이내 수요업체에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 친환경 기술 제품 및 재활용 기술 개발 업체
 - 기존 제품 및 공정 대비 소비전력 저감 및 제조자의 제품 폐기물 재활용 기술 여부 등
- 관련 인증 및 신고제도 대상기업
 - ISO, KS 등 국내외 표준인증업체
- 기타
 -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정부 포상 업체
 - 정부 지원과제 참여성과가 우수한 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녹색성장발전전략의 그린 IT 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사업 관련업체 우대
- 박막태양전지기술, LED 응용기술 등
- 대일 무역역조 등을 개선하기 위한 원천기술(특허 등) 보유업체
- 국산화 대체 우수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M&A 혹은 해외기업을 인수하려는 업체 우대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02-2110-4793)
- 지식경제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02-2110-5686)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활용과 (02-2110-5158)

9. 로봇 응용

□ 개념

로봇 및 관련 부품·소재의 제조·유통, 로봇 SW 및 서비스 콘텐츠 산업 및 타 분야의 로봇화로 파생되는 산업

□ 대표품목

- 라이프케어 로봇 : 생활도우미로봇, 탑승형로봇, 근력증강로봇, 인지바이오로봇
- 청정생산용 첨단제조 로봇시스템 : 팩토리로봇, 나노-바이오 생산로봇, 차세대 에너지/정보소자 제조 로봇
- 지속가능 사회안전로봇시스템 : 감시·경계 로봇시스템, 환경감시 로봇시스템, 재난방재 로봇시스템
- 창의적 에듀테인먼트 로봇 : 사용자 창조형 로봇 및 콘텐츠, 실감형 Sportainment 로봇, 교사도우미 로봇
- 고부가 의료 서비스 로봇 : 정밀 관절 수술 로봇, 의료 보조 서비스 로봇, 무절개 수술 로봇 시스템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6219(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C26299(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C26329(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C27199(그외 기타 의료용기기 제조업), C27212(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8519(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C29280(산업용 로봇 제조업), C30310(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C33401(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1(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428(기능별 로봇), 8479.50(산업용 로봇), 8486(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87류(무인자동차), 88류(무인항공기)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관련 인증 및 신고제도 대상기업
 - 로봇산업인의 밤 행사시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NEP 인증을 받은 기업
 - 지능형 로봇제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
- 기타
 - 지경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지경부 21C 프런티어사업 참여기업
 - 지경부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시장검증 및 시범서비스사업 참여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지능형로봇 개발, 제조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영위하면서 지능형로봇 사업의 매출액이 일정 비중 이상인 중소기업 우대
- 지능형로봇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또는 전문인력 보유현황이 일정 비중 이상인 중소기업 우대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로봇팀 (02-2110-5629)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02-2100-6813)

10. 신소재·나노융합

10-1)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10-2) Ionic Liquid(IL) 소재

10-3) 나노탄소 융합소재

10-4) 기능성 나노 필름

10-5)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 개념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는 그린수송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차체 경량화를 가능케 하는 핵심소재

□ 대표품목

고품질 마그네슘 원소재, 연속제조 마그네슘 중간재, 고기능 마그네슘 부품, 초경량 마그네슘 모듈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39(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C242(1차 비철금속 제조업), C243(금속 주조업), C251(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C259(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30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C302(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3(자동차 부품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1류(기타의비금속), 82류(비금속제공구,스푼·포크), 83류(각종비금속제품)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나노융합산업 관련 대상기업으로,
 -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기업
 - * 현재 나노융합산업 분야는 표준산업분류코드 미등록
- 관련 인증 및 신고제도 대상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 NEP, NET, ISO9001등 국내외 인증을 통과한 기업
- 기타
 - 지경부 산업융합기술(나노기반)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나노기반 플랫폼기술개발사업, 나노융합2.0(2010년 이후)R&D 사업 참여 기업
 - 교과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나노융합기술을 상용화하여 시제품 및 제품개발을 통해 시장진입 가능성이 큰 기업
- 기술력
 - 최근 3년이내 정부(지경부) R&D 사업 참여 경력
 - * 사업 성공 여부 : 기술료 납부 실적 (사업화, 생산과 연계된 로얄티 지급 실적)
 - 국내·외 원천 특허 보유 기업
 -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M&A 추진 기업
- 고용창출 기여도
 - 종업원수가 많은 소재기업
 - * 중소기업(<300명), 중견기업, 대기업
 - * 지속적으로 종업원수(고용)가 늘고 있는 기업(년 50명 이상 채용기업)
 - 노사협력 우수 사례 기업
- 생산능력 및 연구개발 투자현황
 - 수출/매출액, 연구개발비/매출액이 높은 기업
 - 신규 투자(생산) 분야와 특허 보유 분야가 부합하는 기업
- 국가 산업발전 정책(신성장동력)과의 부합성
 - 산업 발전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관 분야 R&D가 가능한 기업
 - * 기업 부설연구소 보유(석사급 이상의 연구 인력 보유) 기업
 - * 산업 발전 정책 연관성은 기업 의견 제출 후 심사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614)
- 지식경제부 바이오테크놀로지과 (02-2110-4763)
-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과 (02-2100-6654)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02-2100-6813)

□ 개념

Ionic Liquid 소재는 고온안정성, 환경 친화성 등의 장점을 지녀 그린제품 및 그린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 융합소재

□ 대표품목

전해질/나노융합 소재, 바이오매스 전환소재, 그린공정 소재, 표면 마찰저감 소재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0111(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C20119(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0129(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0131(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C20132(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28류(무기화합물), 29류(유기화합물), 38류(각종화학공업생산물)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나노융합산업 관련 대상기업으로,
 -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기업
 - * 현재 나노융합산업 분야는 표준산업분류코드 미등록
- 관련 인증 및 신고제도 대상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 NEP, NET, ISO9001등 국내외 인증을 통과한 기업
- 기타
 - 지경부 산업융합기술(나노기반)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나노기반 플랫폼기술개발사업, 나노융합2.0(2010년 이후)R&D 사업 참여 기업
 - 교과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나노융합기술을 상용화하여 시제품 및 제품개발을 통해 시장진입 가능성이 큰 기업
- 기술력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경부) R&D 사업 참여 경력
 - * 사업 성공 여부 : 기술료 납부 실적 (사업화, 생산과 연계된 로얄티 지급 실적)
 - 국내·외 원천 특허 보유 기업
 -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M&A 추진 기업
- 고용창출 기여도
 - 종업원수가 많은 소재기업
 - * 중소기업(<300명), 중견기업, 대기업
 - * 지속적으로 종업원수(고용)가 늘고 있는 기업(년 50명 이상 채용기업)
 - 노사협력 우수 사례 기업
- 생산능력 및 연구개발 투자현황
 - 수출/매출액, 연구개발비/매출액이 높은 기업
 - 신규 투자(생산) 분야와 특허 보유 분야가 부합하는 기업
- 국가 산업발전 정책(신성장동력)과의 부합성
 - 산업 발전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관 분야 R&D가 가능한 기업
 - * 기업 부설연구소 보유(석사급 이상의 연구 인력 보유) 기업
 - * 산업 발전 정책 연관성은 기업 의견 제출 후 심사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614)
- 지식경제부 바이오테크과 (02-2110-4763)
-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과 (02-2100-6654)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02-2100-6813)

□ 개념

나노탄소 융합소재는 나노기술 개발 전쟁에 불을 붙인 대표적 핵심 전략 나노소재로 에너지, 환경, 전자·정보, 우주항공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국산화를 통한 소재 분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

□ 대표품목

그래핀 소재, 초다공질 나노기공 탄소불, 탄소 (흑연) 나노 섬유, 나노탄소 융합 복합소재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0111(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C20119(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0129(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0131(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C20132(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28류(무기화합물), 29류(유기화합물), 38류(각종화학공업생산물)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나노융합산업 관련 대상기업으로,
 -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기업
 - * 현재 나노융합산업 분야는 표준산업분류코드 미등록
- 관련 인증 및 신고제도 대상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 NEP, NET, ISO9001등 국내외 인증을 통과한 기업
- 기타
 - 지경부 산업융합기술(나노기반)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나노기반 플랫폼기술 개발사업, 나노융합2.0(2010년 이후)R&D 사업 참여 기업
 - 교과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나노융합기술을 상용화하여 시제품 및 제품개발을 통해 시장진입 가능성이 큰 기업
- 기술력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경부) R&D 사업 참여 경력
 - * 사업 성공 여부 : 기술료 납부 실적 (사업화, 생산과 연계된 로얄티 지급 실적)
 - 국내·외 원천 특허 보유 기업
 -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M&A 추진 기업
- 고용창출 기여도
 - 종업원수가 많은 소재기업
 - * 중소기업(<300명), 중견기업, 대기업
 - * 지속적으로 종업원수(고용)가 늘고 있는 기업(년 50명 이상 채용기업)
 - 노사협력 우수 사례 기업
- 생산능력 및 연구개발 투자현황
 - 수출/매출액, 연구개발비/매출액이 높은 기업
 - 신규 투자(생산) 분야와 특허 보유 분야가 부합하는 기업
- 국가 산업발전 정책(신성장동력)과의 부합성
 - 산업 발전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관 분야 R&D가 가능한 기업
 - * 기업 부설연구소 보유(석사급 이상의 연구 인력 보유) 기업
 - * 산업 발전 정책 연관성은 기업 의견 제출 후 심사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614)
- 지식경제부 바이오테크과 (02-2110-4763)
-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과 (02-2100-6654)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02-2100-6813)

□ 개념

기능성 나노필름은 기존 필름에 나노기술을 융합하여 복합적 기능을 갖도록 만들어진 필름으로 Flexible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2차전지 등에 활용

□ 대표품목

전도성 나노필름, 광학용 나노필름, 열응용 나노필름, 에너지 변환 나노필름, 고강성/저마찰/초발수 나노필름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0302(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 제조업), C20431(계면활성제제조업), C20491(사진용 화학제품, 감광재료제조업), C205(화학섬유 제조업), C262(전자부품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28-33(각종 화학생산품), 85류(전기기기·TV·VTR)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나노융합산업 관련 대상기업으로,
 -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기업
 - * 현재 나노융합산업 분야는 표준산업분류코드 미등록
- 관련 인증 및 신고제도 대상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 NEP, NET, ISO9001등 국내외 인증을 통과한 기업
- 기타
 - 지경부 산업융합기술(나노기반)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나노기반 플랫폼기술개발사업, 나노융합2.0(2010년 이후)R&D 사업 참여 기업
 - 교과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나노융합기술을 상용화하여 시제품 및 제품개발을 통해 시장진입 가능성이 큰 기업
- 기술력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경부) R&D 사업 참여 경력
 - * 사업 성공 여부 : 기술료 납부 실적 (사업화, 생산과 연계된 로얄티 지급 실적)
 - 국내·외 원천 특허 보유 기업
 -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M&A 추진 기업
- 고용창출 기여도
 - 종업원수가 많은 소재기업
 - * 중소기업(<300명), 중견기업, 대기업
 - * 지속적으로 종업원수(고용)가 늘고 있는 기업(년 50명 이상 채용기업)
 - 노사협력 우수 사례 기업
- 생산능력 및 연구개발 투자현황
 - 수출/매출액, 연구개발비/매출액이 높은 기업
 - 신규 투자(생산) 분야와 특허 보유 분야가 부합하는 기업
- 국가 산업발전 정책(신성장동력)과의 부합성
 - 산업 발전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관 분야 R&D가 가능한 기업
 - * 기업 부설연구소 보유(석사급 이상의 연구 인력 보유) 기업
 - * 산업 발전 정책 연관성은 기업 의견 제출 후 심사

□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614)
- 지식경제부 바이오테크과 (02-2110-4763)
-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과 (02-2100-6654)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02-2100-6813)

□ 개념

나노융합 바이오머신은 나노구조체 또는 나노부품으로 조립된 수십 μm 크기의 시스템으로 초소형 감지기, 구동기 등에 적용

□ 대표품목

나노융합바이오 시스템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13(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C272(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광학기기 제외),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30류(의료용품), 90류(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나노융합산업 관련 대상기업으로,
 -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기업
 - * 현재 나노융합산업 분야는 표준산업분류코드 미등록
- 관련 인증 및 신고제도 대상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 NEP, NET, ISO9001등 국내외 인증을 통과한 기업
- 기타
 - 지경부 산업융합기술(나노기반)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나노기반 플랫폼기술개발사업, 나노융합2.0(2010년 이후)R&D 사업 참여 기업
 - 교과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나노융합기술을 상용화하여 시제품 및 제품개발을 통해 시장진입 가능성이 큰 기업
- 기술력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경부) R&D 사업 참여 경력
 - * 사업 성공 여부 : 기술료 납부 실적 (사업화, 생산과 연계된 로얄티 지급 실적)
 - 국내·외 원천 특허 보유 기업
 -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M&A 추진 기업
- 고용창출 기여도
 - 종업원수가 많은 소재기업
 - * 중소기업(<300명), 중견기업, 대기업
 - * 지속적으로 종업원수(고용)가 늘고 있는 기업(년 50명 이상 채용기업)
 - 노사협력 우수 사례 기업
- 생산능력 및 연구개발 투자현황
 - 수출/매출액, 연구개발비/매출액이 높은 기업
 - 신규 투자(생산) 분야와 특허 보유 분야가 부합하는 기업
- 국가 산업발전 정책(신성장동력)과의 부합성
 - 산업 발전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관 분야 R&D가 가능한 기업
 - * 기업 부설연구소 보유(석사급 이상의 연구 인력 보유) 기업
 - * 산업 발전 정책 연관성은 기업 의견 제출 후 심사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614)
- 지식경제부 바이오테크과 (02-2110-4763)
-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과 (02-2100-6654)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02-2100-6813)

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11-1) 바이오 의약품

11-2)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11-3)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11-4)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11-5)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11-6)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 개념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한 치료제

□ 대표품목

유전자 치료제, 항체 및 단백질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A01299(그외 기타 축산업), C13999(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C20499(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C21101(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C21102(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1210(완제 의약품 제조업), C22212(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C2732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3003(의약품, 두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 3004(의약품, 혼합 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해당업종

- 농생명바이오자원개발 : 곡물 및 기타 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관련 산업체 등
- 생명공학 업체 :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세포 조직공학, 생물공정 등
- 생물자원 생산 및 가공업체 : 식물·동물자원이용, 식품공학, 생물소재 등
- 바이오소재 개발 : 농생명유래 소재·물질,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시트 판매·제조업 등
- 바이오제약 : 의약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
- 바이오장기 : 바이오장기 이식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 고령친화 의료기기 :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기기 제조업 등
- 메디-바이오진단 시스템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등
- u-Health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 * 휴대형 만성질환 및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무선환자 감시장치 개발 등
- 영상 및 생체현상 진단기기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
 - * 프리미엄급 초음파진단기, 3D 혈관조영기술, 차세대 복합영상 Digital X-ray, 환자모니터링시스템, 미래형 PACS시스템 등
- 디지털병원 IT솔루션 개발 및 제조업체
 - * 다중언어 지원기능을 갖춘 Web EMR시스템, 솔루션간 원격관리를 위한 SCADA 시스템 개발, 의료영상 소프트웨어기술개발, web-based 교육훈련시스템 등
-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업체
 - *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 치과용 임플란트, 인공수정체, 인공무릎관절 등
 - * 삶의질 향상 의료기기 : Barrier-Free 전동휠체어, 무선제어기반의 보청기 등

○ 관련 인증 및 신고 제도 대상기업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 u-Health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보유 기업
- 영상 및 생체현상 진단기기 기술 개발 및 보유 기업
- 디지털병원 IT솔루션 개발 및 보유 기업
-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및 보유 기업

○ 기타

- 지경부 바이오의료기기원천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교과부 바이오신약및장기개발사업 참여기업
-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기업, 상장기업 등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신성장동력 품목을 연구개발·생산하는 기업이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R&D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매출이 발생한 기업
 - * R&D 투자 비율 : 해당기업의 전년도 총 R&D 투자액 중 해당 품목에 대한 R&D 투자가 대기업 10%, 중소벤처기업 30%이상
- 만성질환자(당뇨, 심혈관 등)관리를 위한 핵심 부품 및 시스템과 u-Health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분야의 u-Health 산업에 부합되어야 함
- 실시간 응답형 고해상도 의료영상기기 및 고해상, 고감도 특성을 갖는 반도체기반의 차세대 복합의료 영상진단 핵심부품 및 시스템 등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분야의 영상 및 생체형상 진단기기에 부합되어야 함
- 디지털병원 주요 시스템(PACS, OCS, SCM 등)간의 상호 연동 가능한 네트워킹 및 기능별, 임상과별 통합솔루션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성장분야의 디지털병원 IT 솔루션 분야에 부합되어야 함
- 노인성 질환 극복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 의료기기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분야의 추진 목표와 부합되어야 함

□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기술과 (02-2023-7596)
-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 (02-2110-5665)
-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팀 (02-2100-6654)

□ 개념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한 치료제

□ 대표품목

기능성작물, 실크소재 인공뼈, 동물용 항생제, 단백질 치료제 생산 형질전환 동물, 단백질 치료제, 이종장기 생산용 미니돼지, 이종 장기제품(췌도, 신장, 간 등)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A01110(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A01123(종자 및 묘목 생산업), A01140(기타 작물 재배업), A01299(그외 기타 축산업), C20499(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C21101(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C21102(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1210(완제 의약품 제조업),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C22299(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M70111(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C2732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0106(기타의 산 동물), 0602(기타의 산 식물), 3001(장기 요법용의 선과 기타기관), 3003(의약품), 3004(의약품), 9021(정형외과용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 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합/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해당업종

- 농생명바이오자원개발 : 곡물 및 기타 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관련 산업체 등
- 생명공학 업체 :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세포 조직공학, 생물공정 등
- 생물자원 생산 및 가공업체 : 식물·동물자원이용, 식품공학, 생물소재 등
- 바이오소재 개발 : 농생명유래 소재·물질,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시트 판매·제조업 등
- 바이오제약 : 의약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
- 바이오장기 : 바이오장기 이식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 고령친화 의료기기 :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기기 제조업 등
- 메디-바이오진단 시스템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등
- u-Health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 * 휴대형 만성질환 및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무선환자 감시장치 개발 등
- 영상 및 생체현상 진단기기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
 - * 프리미엄급 초음파진단기, 3D 혈관조영기술, 차세대 복합영상 Digital X-ray, 환자모니터링시스템, 미래형 PACS시스템 등
- 디지털병원 IT솔루션 개발 및 제조업체
 - * 다중언어 지원기능을 갖춘 Web EMR시스템, 솔루션간 원격관리를 위한 SCADA 시스템 개발, 의료영상 소프트웨어기술개발, web-based 교육훈련시스템 등
-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업체
 - *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 치과용 임플란트, 인공수정체, 인공무릎관절 등
 - * 삶의질 향상 의료기기 : Barrier-Free 전동휠체어, 무선제어기반의 보청기 등

○ 관련 인증 및 신고 제도 대상기업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 u-Health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보유 기업
- 영상 및 생체현상 진단기기 기술 개발 및 보유 기업
- 디지털병원 IT솔루션 개발 및 보유 기업
-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및 보유 기업

○ 기타

- 지경부 바이오의료기기원천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교과부 바이오신약및장기개발사업 참여기업
-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기업, 상장기업 등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신성장동력 품목을 연구개발·생산하는 기업이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R&D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매출이 발생한 기업
 - * R&D 투자 비율 : 해당기업의 전년도 총 R&D 투자액 중 해당 품목에 대한 R&D 투자가 대기업 10%, 중소벤처기업 30%이상
- 만성질환자(당뇨, 심혈관 등)관리를 위한 핵심 부품 및 시스템과 u-Health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분야의 u-Health 산업에 부합되어야 함
- 실시간 응답형 고해상도 의료영상기기 및 고해상, 고감도 특성을 갖는 반도체기반의 차세대 복합의료 영상진단 핵심부품 및 시스템 등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분야의 영상 및 생체형상 진단기기에 부합되어야 함
- 디지털병원 주요 시스템(PACS, OCS, SCM 등)간의 상호 연동 가능한 네트워킹 및 기능별, 임상과별 통합솔루션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성장분야의 디지털병원 IT 솔루션 분야에 부합되어야 함
- 노인성 질환 극복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 의료기기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분야의 추진 목표와 부합되어야 함

□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농촌진흥청 첨단농업과 (031-299-2902)
-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팀 (02-2100-6654)

□ 개념

바이오매스의 생물/화학적/물리적 전환에 의해 생산된 바이오 제품

□ 대표품목

바이오유래 플랫폼 화학제품, 바이오 섬유/플라스틱, 기능성 바이오 화학소재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A01110(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A01123(종자 및 묘목 생산업), A01140(기타 작물 재배업), A01299(그외 기타 축산업), B07290(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C10619(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C13999(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C20111(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C20499(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C211(기초 의약품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12(의약품 제조업),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C22222(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299(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M70111(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C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C2732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0106(기타의 산 동물), 0602(기타의 산 식물), 3003(의약품), 3004(의약품), 3005(탈지면/거스/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3006(의료용품)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해당업종

- 농생명바이오자원개발 : 곡물 및 기타 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관련 산업체 등
- 생명공학 업체 :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세포 조직공학, 생물공정 등
- 생물자원 생산 및 가공업체 : 식물·동물자원이용, 식품공학, 생물소재 등
- 바이오소재 개발 : 농생명유래 소재·물질,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시트 판매·제조업 등
- 바이오제약 : 의약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
- 바이오장기 : 바이오장기 이식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 고령친화 의료기기 :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기기 제조업 등
- 메디-바이오진단 시스템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등
- u-Health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 * 휴대형 만성질환 및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무선환자 감시장치 개발 등
- 영상 및 생체현상 진단기기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
 - * 프리미엄급 초음파진단기, 3D 혈관조영기술, 차세대 복합영상 Digital X-ray, 환자모니터링시스템, 미래형 PACS시스템 등
- 디지털병원 IT솔루션 개발 및 제조업체
 - * 다중언어 지원기능을 갖춘 Web EMR시스템, 솔루션간 원격관리를 위한 SCADA 시스템 개발, 의료영상 소프트웨어기술개발, web-based 교육훈련시스템 등
-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업체
 - *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 치과용 임플란트, 인공수정체, 인공무릎관절 등
 - * 삶의질 향상 의료기기 : Barrier-Free 전동휠체어, 무선제어기반의 보청기 등

○ 관련 인증 및 신고 제도 대상기업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 u-Health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보유 기업
- 영상 및 생체현상 진단기기 기술 개발 및 보유 기업
- 디지털병원 IT솔루션 개발 및 보유 기업
-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및 보유 기업

○ 기타

- 지경부 바이오의료기기원천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교과부 바이오신약및장기개발사업 참여기업
-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기업, 상장기업 등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신성장동력 품목을 연구개발·생산하는 기업이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R&D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매출이 발생한 기업
 - * R&D 투자 비율 : 해당기업의 전년도 총 R&D 투자액 중 해당 품목에 대한 R&D 투자가 대기업 10%, 중소벤처기업 30%이상
- 만성질환자(당뇨, 심혈관 등)관리를 위한 핵심 부품 및 시스템과 u-Health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분야의 u-Health 산업에 부합되어야 함
- 실시간 응답형 고해상도 의료영상기기 및 고해상, 고감도 특성을 갖는 반도체기반의 차세대 복합의료 영상진단 핵심부품 및 시스템 등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 분야의 영상 및 생체형상 진단기기에 부합되어야 함
- 디지털병원 주요 시스템(PACS, OCS, SCM 등)간의 상호 연동 가능한 네트워킹 및 기능별, 임상과별 통합솔루션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성장분야의 디지털병원 IT 솔루션 분야에 부합되어야 함
- 노인성 질환 극복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 의료기기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분야의 추진 목표와 부합되어야 함

□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 (02-2110-5665)

□ 개념

BINT 융합기술로 조기 예진, 진단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 대표품목

질량분석기반 초고속 디지털 분자 진단 시스템, 소형/의료용 질량분석기반 진단기기, 신기술 융합형 분자진단 시스템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C22299(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7111(방사선 장치 제조업), C27112(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C27199(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90(기타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C2732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C2719(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3006(의료용품), 9022(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9027(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9031(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해당업종

- 농생명바이오자원개발 : 곡물 및 기타 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관련 산업체 등
- 생명공학 업체 :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세포 조직공학, 생물공정 등
- 생물자원 생산 및 가공업체 : 식물·동물자원이용, 식품공학, 생물소재 등
- 바이오소재 개발 : 농생명유래 소재·물질,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시트 판매·제조업 등
- 바이오제약 : 의약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
- 바이오장기 : 바이오장기 이식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 고령친화 의료기기 :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기기 제조업 등
- 메디-바이오진단 시스템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등
- u-Health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 * 휴대형 만성질환 및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무선환자 감시장치 개발 등
- 영상 및 생체현상 진단기기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
 - * 프리미엄급 초음파진단기, 3D 혈관조영기술, 차세대 복합영상 Digital X-ray, 환자모니터링시스템, 미래형 PACS시스템 등
- 디지털병원 IT솔루션 개발 및 제조업체
 - * 다중언어 지원기능을 갖춘 Web EMR시스템, 솔루션간 원격관리를 위한 SCADA 시스템 개발, 의료영상 소프트웨어기술개발, web-based 교육훈련시스템 등
-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업체
 - *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 치과용 임플란트, 인공수정체, 인공무릎관절 등
 - * 삶의질 향상 의료기기 : Barrier-Free 전동휠체어, 무선제어기반의 보청기 등

○ 관련 인증 및 신고 제도 대상기업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 u-Health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보유 기업
- 영상 및 생체현상 진단기기 기술 개발 및 보유 기업
- 디지털병원 IT솔루션 개발 및 보유 기업
-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및 보유 기업

○ 기타

- 지경부 바이오의료기기원천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교과부 바이오신약및장기개발사업 참여기업
-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기업, 상장기업 등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신성장동력 품목을 연구개발·생산하는 기업이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R&D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매출이 발생한 기업
 - * R&D 투자 비율 : 해당기업의 전년도 총 R&D 투자액 중 해당 품목에 대한 R&D 투자가 대기업 10%, 중소벤처기업 30%이상
- 만성질환자(당뇨, 심혈관 등)관리를 위한 핵심 부품 및 시스템과 u-Health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분야의 u-Health 산업에 부합되어야 함
- 실시간 응답형 고해상도 의료영상기기 및 고해상, 고감도 특성을 갖는 반도체기반의 차세대 복합의료 영상진단 핵심부품 및 시스템 등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분야의 영상 및 생체형상 진단기기에 부합되어야 함
- 디지털병원 주요 시스템(PACS, OCS, SCM 등)간의 상호 연동 가능한 네트워킹 및 기능별, 임상과별 통합솔루션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성장분야의 디지털병원 IT 솔루션 분야에 부합되어야 함
- 노인성 질환 극복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 의료기기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분야의 추진 목표와 부합되어야 함

□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 (02-2110-5665)
-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팀 (02-2100-6654)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기술과 (02-2023-7596)

□ 개념

의학적으로 유용한 모든 생체정보를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측정/영상화 하는 조기진단/치료분야의 최첨단 핵심기술

□ 대표품목

모노크로메틱 x-선 기기, 멀티에너지 저선량 영상센싱기기, 3차원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방사선 의약품 자동합성장치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C27111(방사선 장치 제조업), C27112(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C27199(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90(기타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19(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3006(의료용품), 9018(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9022(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9031(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해당업종

- 농생명바이오자원개발 : 곡물 및 기타 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관련 산업체 등
- 생명공학 업체 :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세포 조직공학, 생물공정 등
- 생물자원 생산 및 가공업체 : 식물·동물자원이용, 식품공학, 생물소재 등
- 바이오소재 개발 : 농생명유래 소재·물질,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시트 판매·제조업 등
- 바이오제약 : 의약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
- 바이오장기 : 바이오장기 이식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 고령친화 의료기기 :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기기 제조업 등
- 메디-바이오진단 시스템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등
- u-Health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 * 휴대형 만성질환 및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무선환자 감시장치 개발 등
- 영상 및 생체현상 진단기기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
 - * 프리미엄급 초음파진단기, 3D 혈관조영기술, 차세대 복합영상 Digital X-ray, 환자모니터링시스템, 미래형 PACS시스템 등
- 디지털병원 IT솔루션 개발 및 제조업체
 - * 다중언어 지원기능을 갖춘 Web EMR시스템, 솔루션간 원격관리를 위한 SCADA 시스템 개발, 의료영상 소프트웨어기술개발, web-based 교육훈련시스템 등
-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업체
 - *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 치과용 임플란트, 인공수정체, 인공무릎관절 등
 - * 삶의질 향상 의료기기 : Barrier-Free 전동휠체어, 무선제어기반의 보청기 등

○ 관련 인증 및 신고 제도 대상기업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 u-Health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보유 기업
- 영상 및 생체현상 진단기기 기술 개발 및 보유 기업
- 디지털병원 IT솔루션 개발 및 보유 기업
-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및 보유 기업

○ 기타

- 지경부 바이오의료기기원천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교과부 바이오신약및장기개발사업 참여기업
-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기업, 상장기업 등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신성장동력 품목을 연구개발·생산하는 기업이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R&D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매출이 발생한 기업
 - * R&D 투자 비율 : 해당기업의 전년도 총 R&D 투자액 중 해당 품목에 대한 R&D 투자가 대기업 10%, 중소벤처기업 30%이상
- 만성질환자(당뇨, 심혈관 등)관리를 위한 핵심 부품 및 시스템과 u-Health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분야의 u-Health 산업에 부합되어야 함
- 실시간 응답형 고해상도 의료영상기기 및 고해상, 고감도 특성을 갖는 반도체기반의 차세대 복합의료 영상진단 핵심부품 및 시스템 등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 분야의 영상 및 생체형상 진단기기에 부합되어야 함
- 디지털병원 주요 시스템(PACS, OCS, SCM 등)간의 상호 연동 가능한 네트워킹 및 기능별, 임상과별 통합솔루션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성장분야의 디지털병원 IT 솔루션 분야에 부합되어야 함
- 노인성 질환 극복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 의료기기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분야의 추진 목표와 부합되어야 함

□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 (02-2110-5665)
-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팀 (02-2100-6654)

11-6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 개념

노인성 질환 극복 및 고령화 인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기개발 및 제품 개발

□ 대표품목

삶의 질 향상 고령친화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고령친화 이동/생활지원 기기 및 시스템, 욕창방지 bed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13999(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C22299(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7112(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2(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C27193(의료용 가구 제조업), C27199(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111(방사선 장치 제조업), C2719(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3006(의료용품), 9019(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9021(정형외과용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 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합/볼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해당업종

- 농생명바이오자원개발 : 곡물 및 기타 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관련 산업체 등
- 생명공학 업체 :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세포 조직공학, 생물공정 등
- 생물자원 생산 및 가공업체 : 식물·동물자원이용, 식품공학, 생물소재 등
- 바이오소재 개발 : 농생명유래 소재·물질,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시트 판매·제조업 등
- 바이오제약 : 의약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
- 바이오장기 : 바이오장기 이식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 고령친화 의료기기 :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기기 제조업 등
- 메디-바이오진단 시스템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등
- u-Health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 * 휴대형 만성질환 및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무선환자 감시장치 개발 등
- 영상 및 생체현상 진단기기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
 - * 프리미엄급 초음파진단기, 3D 혈관조영기술, 차세대 복합영상 Digital X-ray, 환자모니터링시스템, 미래형 PACS시스템 등
- 디지털병원 IT솔루션 개발 및 제조업체
 - * 다중언어 지원기능을 갖춘 Web EMR시스템, 솔루션간 원격관리를 위한 SCADA 시스템 개발, 의료영상 소프트웨어기술개발, web-based 교육훈련시스템 등
-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업체
 - *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 치과용 임플란트, 인공수정체, 인공무릎관절 등
 - * 삶의질 향상 의료기기 : Barrier-Free 전동휠체어, 무선제어기반의 보청기 등

○ 관련 인증 및 신고 제도 대상기업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 u-Health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보유 기업
- 영상 및 생체현상 진단기기 기술 개발 및 보유 기업
- 디지털병원 IT솔루션 개발 및 보유 기업
-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및 보유 기업

○ 기타

- 지경부 바이오의료기기원천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교과부 바이오신약및장기개발사업 참여기업
-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기업, 상장기업 등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신성장동력 품목을 연구개발·생산하는 기업이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R&D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매출이 발생한 기업
 - * R&D 투자 비율 : 해당기업의 전년도 총 R&D 투자액 중 해당 품목에 대한 R&D 투자가 대기업 10%, 중소벤처기업 30%이상
- 만성질환자(당뇨, 심혈관 등)관리를 위한 핵심 부품 및 시스템과 u-Health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분야의 u-Health 산업에 부합되어야 함
- 실시간 응답형 고해상도 의료영상기기 및 고해상, 고감도 특성을 갖는 반도체기반의 차세대 복합의료 영상진단 핵심부품 및 시스템 등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 분야의 영상 및 생체형상 진단기기에 부합되어야 함
- 디지털병원 주요 시스템(PACS, OCS, SCM 등)간의 상호 연동 가능한 네트워킹 및 기능별, 임상과별 통합솔루션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성장분야의 디지털병원 IT 솔루션 분야에 부합되어야 함
- 노인성 질환 극복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 의료기기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분야의 추진 목표와 부합되어야 함

□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 (02-2110-5665)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기술과 (02-2023-7596)

12. 고부가 식품산업

□ 개념

고부가 식품이란 BT·IT·NT 등의 첨단기술 및 문화·관광 등 타 분야와 접목되어 내재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식품을 일컬으며, 최근 식품안전 및 건강·웰빙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부합하는 새로운 식품을 의미. 기존 전통적 식품개념에서 탈피한 신개념 식품으로 고기능성, 친환경 안전, 특수목적(우주식품, 레저식품 등), 천연소재(화학합성물 무첨가), 개인맞춤형식품 등이 해당됨

□ 대표품목

- 기능성식품 : 개인맞춤형식품, 천연첨가물, 대체식품소재, 특수목적식품 등
- 친환경 안심식품 : 유기식품, 식품안전인자 검지시스템, 식품위해인자 저감시스템 등
- 웰빙 전통식품 : 저염화 전통발효식품, 명품 천일염, 건강기능강화 전통식품 등
- 유비쿼터스 식품시스템 : 유비쿼터스 식품품질센서, 지능형식품 저장·포장, 식품유통 환경조절시스템 등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A01(농업, 단 종자 및 묘목 관련 업종은 제외), A02(임업, 단 종묘 관련 업종은 제외), A03(어업, 단 부화 및 종묘 관련 업종은 제외), C10(식료품 제조업, 단 사료 관련 업종은 제외), C11(음료 제조업), C1623(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C172(골판지종이상자 및 종이용지 제조업), C179(기타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C222(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192(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C25091(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C261(반도체 제조업), C29192(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C2622(인쇄회로기관 및 전자부품 실장기관 제조업), C26294(전자카드 제조업), C26299(그 외 기타전자제품제조업), C26429(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C2921(과실 세척, 분류, 선별기 및 기타농장용 기계제조), C29221(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C29271(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C29299(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J5822(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1210(유선통신업), J61220(무선통신업), J61299(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J62010(컴퓨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업), J62021(컴퓨터 시스템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90(기타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J6311(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J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J63999(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02(육과 식용설육, 단 식용에 한함), 03(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단 식용에 한함), 04(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단 식용에 한함), 07(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단 식용에 한함), 08(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9(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10(곡물), 11(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2(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단 식용에 한함), 13(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단 식용에 한함), 15(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단 식용에 한함), 16(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7(당류와 설탕과자), 18(코코아와 그 조제품), 19(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20(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1(각종 조제식료품), 22(음료·알코올 및 식초), 2501(소금, 단 식용에 한함), 2936(프로비타민과 비타민), 39(플라스틱과 그 제품), 4415(목재의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재의 케이블드럼, 목재의 페렛·박스페렛, 기타의 깔판류와 목재의 페렛칼러), 47(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 48(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70(유리와 유리제품), 7612(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드럼·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 8309(비금속제의 전·캡과 뚜껑·병용의 캡슐·나선형의 마개·마개용커버·실 및 기타의 포장용 부속품), 8420(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 및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2(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합,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8471(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8479(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 8517(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8529(부분품), 8543(기타의 전기기기), 9027(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점토·포로 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탐)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해당업종
 - 음식료품·기능성식품 제조기업, 식품포장·기계 등 관련 생산설비 제조기업
- 관련 인증 및 신고제도 대상기업
 - 우수식품인증(식품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 식품기업
 - ISO 인증 식품제조기업
 - 식품명인 인증, 유기농/친환경 농산물 인증, HACCP(식품), GMP(건강기능식품), 농·수·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 지리적표시제
- 기타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우수”이상의 최종평가를 받은 기업
 -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활용하는 기업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 국내 농수산물을 소재로 개별인정형을 받은 기능성식품 관련 기업
 - 최근 5년 이내에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인정받은 기업
 - (전통주) 농림수산식품부의 주류 추천면허를 받은 기업
 - 친환경 기술* 적용 기업
 - * 화석연료 대체 가공·살균 기술, 저에너지 생산시스템, 친환경 식품 포장재 제조 또는 사용(50% 이상)

□ 대상기업 우대 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매출액 대비 수출금액 비중이 높거나 전년 대비 수출신장률이 높은 기업
- 국내 식재료(농수산물) 사용비율이 높은 기업

□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식품명인, 식품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
 - *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 ISO 인증, GAP 인증, 농·수·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 HACCP, 유기농/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리적표시제

◆ 문의처 / 담당자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팀 (02-500-1919)

Ⅲ

고부가 서비스 산업

13. 글로벌 헬스케어

□ 개념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은 ①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②해외에 병원건설과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자원조달, 건축과 감리, 운영 등 병원 건립과 운영에 대한 일체의 서비스를 Turn Key Base로 제공하는 해외병원 신설·운영 컨설팅업 및 ③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형태의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소비자 중심의 u-Health로 구성된 산업.

□ 대표품목 (서비스)

-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대상 진단·치료·예방 서비스,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Agency 등)의 유치 서비스, 외국인 환자 전담서비스 인력(코디네이터 등) 양성 서비스.
- 의료기관 및 컨설팅 업체의 해외병원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서비스.
- u-Health 장비(기기생체신호 계측기기, 바이오 센서, 행동 모니터링 기기, 의료용 로봇, 네트워킹 기기, IPTV, 데이터 저장 및 기록기기 등), u-Health 서비스(원격자문, 원격판독, 원격진료, 원격상담, 원격모니터링, 원격재활, 질환관리, 생활습관패턴관리, 방문간호원격지원, 원격복약관리, 원격정신건강관리, 원격응급의료, 예측맞춤형의료, 출산육아관리 등).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213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C26429(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C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C28519(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G46442(의료용품 도매업), G47811(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J5822(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121(유선통신업), J6122(무선통신업), J6201(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2(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J6312(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J6399(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M71531(경영컨설팅업), N7521(여행사업), P85302(대학교), Q8610(병원), Q8620(의원), Q8690(기타 보건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30(의료용품; 의약품 등), 9018(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 9019(기계 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9021(정형외과용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 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9022(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해당업종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등록된 외국인 환자의 유치의료기관, 유치업체.
 - * 의료법(제27조 2항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 메디-바이오진단 시스템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등
 - u-Health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 * 휴대형 만성질환 및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무선환자 감시장치 개발 등
 - 영상 및 생체현상 진단기기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
 - * 프리미엄급 초음파진단기, 3D 혈관조영기술, 차세대 복합영상 Digital X-ray, 환자 모니터링시스템, 미래형 PACS시스템 등
 - 디지털병원 IT솔루션 개발 및 제조업체
 - * 다중언어 지원기능을 갖춘 Web EMR시스템, 솔루션간 원격관리를 위한 SCADA시스템 개발, 의료영상 소프트웨어기술개발, web-based 교육훈련시스템 등
 - u-Health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등
- 관련 인증 및 신고 제도 대상기업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 u-Health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보유 기업
 - 영상 및 생체현상 진단기기 기술 개발 및 보유 기업
 - 디지털병원 IT솔루션 개발 및 보유 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나 유치 인프라가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 전년 대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실인원 수 기준)이 상위 30%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 외국인 진료센터, 전용병원, 전담 코디네이터 등 유치 인프라가 우수한 의료기관
 - 다국어 전용 홈페이지 등 유치 인프라가 우수한 유치업체
- 신성장동력 품목을 연구개발·생산하는 기업이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R&D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매출이 발생한 기업
 - * R&D 투자 비중 : 해당기업의 전년도 총 R&D 투자액 중 해당 품목에 대한 R&D 투자가 대기업 10%, 중소벤처기업 30%이상
- 만성질환자(당뇨, 심혈관 등)관리를 위한 핵심 부품 및 시스템과 u-Health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분야의 u-Health 산업에 부합되어야 함
- 실시간 응답형 고해상도 의료영상기기 및 고해상, 고감도 특성을 갖는 반도체기반의 차세대 복합의료 영상진단 핵심부품 및 시스템 등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분야의 영상 및 생체현상 진단기기에 부합되어야 함
- 디지털병원 주요 시스템(PACS, OCS, SCM 등)간의 상호 연동 가능한 네트워킹 및 기능별, 임상과별 통합솔루션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성장분야의 디지털병원 IT 솔루션 분야에 부합되어야 함
- 노인성 질환 극복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 의료기기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로 신성장분야의 추진 목표와 부합되어야 함
- u-Health관련 서비스를 제공 및 준비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기 및 솔루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제도

* 관련 법·제도

- 의료법 (제27조 2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문의처 / 담당자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02-2023-7580)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 개념

- 쌍방향으로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온라인 및 전파방송을 통해 교육, 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와 이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구축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상호작용의 의도를 가지고 교수설계된 교육콘텐츠 제공과 시스템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하는 산업
- u-러닝 관련 기술, 콘텐츠, 서비스 등 한국의 u-러닝 표준모델 세계화 실현 및 산업체,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산업

□ 대표품목

LMS, KMS, ERP 등 종합적인 지식관리 시스템, 디지털교과서, 전자철판, Mobile 콘텐츠 저작도구 및 활용 콘텐츠, 지능형 센서, RFID, IPTV, 전자철판, 로봇, 단말기, 지식서비스 핵심 SW(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이러닝, 시험인증 등), 공개 SW, 임베디드 SW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J58111(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J58211(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J60221(프로그램 공급업), J60222(유선방송업), J60229(위성 및 기타 방송업), J62010(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21(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90(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J62022(컴퓨터 시설 관리업), J6311(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J6312(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J6399(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P85120(초등학교), P852(중등교육기관), P853(고등교육기관), P85410(특수학교)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해당업종
 - 「이러닝 산업 발전법」에 근거한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이러닝 콘텐츠 및 이러닝 콘텐츠 운용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 이러닝의 수행·평가·자문과 관련된 서비스 업
- 용역이 아닌 라이선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형태의 패키지SW개발업
 - 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 시스템SW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SW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기업
 - * 대상기업 선정의 핵심은 기술력과 시장잠재력을 고려해야 하므로 인력이 보유한 기술력 기반인 IT서비스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필요
- 국제표준화 단체 및 기관 참여 기업
 - 해당 분야 관련 각종 국제표준화 단체 및 기관 참여 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기술력
 - 관련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정부 R&D 사업 참여 경력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
 - 국내·외 원천 특허 보유 기업
- 국가 산업발전 정책(신성장동력)과의 부합성
 - 산업 발전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관 분야 R&D가 가능한 기업
- 기업의 우량성
 - 자본 및 부채비율, 매출·영업이익 등 재무구조
 - SW기술인력 보유 수준(직원 중 기술인력 비율, 경력 등)
- 기타
 - 국내외 해당 분야 표준화 활동 참여 실적
 - 우수SW시상 수상경력 및 이러닝 우수 기업 수상 실적이 있는 기업
 - 외근 3년 이내 벤처투자 참여기업

□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육성과 (02-2100-6171)

15. 녹색 금융

15

녹색금융 (해당사항 없음)

개념

-

대표품목(서비스)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16. 콘텐츠·소프트웨어

16-1) 콘텐츠

16-2) 소프트웨어

□ 개념

콘텐츠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

□ 대표품목

방송콘텐츠(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애니메이션 콘텐츠(TV용/극장용 애니메이션 등), 게임(온라인/비디오 게임, 게임솔루션 등), 융합콘텐츠(가상세계, CG, 양방향콘텐츠 등)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J59111(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2(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제작업), J59113(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4(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J58211(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3120(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J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9504.10.0000(비디오 게임용구, 단 TV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에 한함), 9503.00.21(인형, 단 옷을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9503.00.2910(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우수문화프로젝트 정의
 - 우수문화프로젝트는 창작성 및 성공가능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
-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0조의 2)
 - 제작 기획의 우수성, 제작의 완성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규정
 - 우수문화사업자는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의미하므로 제작·개발 능력의 우수성, 사업화 성공가능성, 활용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규정
 -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공통요소로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과, 결과물이 선량한 풍속 및 공공질서를 해하지 않을 것을 열거함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경우 선량한 풍속 및 공공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신제품인증대상에서 제외(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9조)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 확대
 - * 영화·게임·음악·애니메이션·방송영상 등 육성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확대
 -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융합신기술, 산업 창출
 - *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
-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 지정요건

구분	우수문화프로젝트	우수문화사업자
주요기준 (법 제15조의2)	창작성 및 성공 가능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지정요건 (영 제20조의2 제1항 및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 기획의 우수성 ○ 제작의 완성 가능성 ○ 해외 공동제작 또는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개발능력의 우수성 ○ 사업화 성공가능성 ○ 문화상품·문화기술의 활용가능성 ○ 고용창출 가능성 ○ 기술 수준의 향상 가능성(문화기술에 한함)
저정 제외(영 제20조의2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하는 경우 	

- 대상기업 선정방법
 -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가기준을 제시한 후 대상기업 공모

□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2-3704-9622)

□ 개념

소프트웨어(SW)산업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에 설치되어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품 혹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대표품목

- 공개SW :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SW, SaaS, 리눅스 OS, 그린SW
- 지능형 인터페이스 : 텔레매틱스, 디지털홈, 자동통역 등의 인터페이스
- 임베디드SW : 군사, 항공, 로봇, 자동차, 조선 등에 융합하는 SW
- 사회안전시스템 : 개인용 안전시스템, 공공용 안전시스템
- 차세대웹 : 시맨틱웹,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웹, 지능형 검색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R901(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매체)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용역이 아닌 라이선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형태의 패키지SW개발업
 - 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 시스템SW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SW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기업
 - * 대상기업 선정의 핵심은 기술력과 시장잠재력을 고려해야 하므로 인력이 보유한 기술력 기반인 IT서비스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필요
- 《해당 SW업종의 특징》
 - 시스템SW 분야는 OS, DBMS, SMS, 보안, 임베디드 시스템SW 등의 플랫폼 기술로써 시장지위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우나 일단 기술 및 시장을 확보하면 기반SW의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 독점이 가능
 - ☞ 평가 포인트 : 글로벌 제품과 경쟁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상품 및 기업 (기술 특허, 글로벌SW의 주요기능 대체 기술 등)
 - * 네트워크 효과 : 동일한 SW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제품으로 전환에 따른 비용(추가적 학습, 대량공급에 의한 비용절감효과 상실)과 장애요인(자료 호환성 등)이 증가하게 되어 전환이 용이하지 않게 되는 현상
 - 응용SW 분야는 사무·회계·기업관리용 등의 다양한 SW분야를 포함하며, 주요 솔루션은 대체로 글로벌기업이 선점한 형태의 시장구조를 떠나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이 용이한 특징이 있음
 - ☞ 평가 포인트 : 특정분야에 특화 정도, 글로벌 제품과 낮은 경쟁 또는 경쟁 가능한 상황, 적정규모의 잠재시장 형성 가능성 등
- 관련 인증 및 신고제도 대상 기업
 - SW사업자 신고를 한 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SW뉴딜 등 국가전략 과제와의 부합
 - 융합SW, 그린SW, SW뉴딜 사업 등 국가적 전략사업과 연관성
 - 타 산업분야 업무 프로세스 및 제조공정 개선에 대한 기여도
 - SW해외진출 대상 모듈화 및 현지화 가능성
- 제품의 기능·기술의 우수성
 - 특허 획득을 통한 기능·기술의 선점, 기술의 독자성 및 경쟁자에 대한 진입장벽 수준
 - SW 완성도를 입증할 인증 획득(GS인증 등)
 - 국내 유사 제품 대비 경쟁우위 및 외산솔루션과의 경쟁가능성
 - 해외 주요시장 수출 실적 및 글로벌 SW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 제품의 시장성
 - 해당 SW의 타겟시장 규모, 시장내 성장성 및 주요 레퍼런스
 - 해당 SW가 보유한 기능·기술의 응용분야 확장성
- 기업의 우량성
 - 자본 및 부채비율, 매출·영업이익 등 재무구조
 - SW기술인력 보유 수준(직원 중 기술인력 비율, 경력 등)
 - R&D투자 비중 및 기술료 유출 여부
- 기타
 - 해외 SW기업 및 국내 SW대기업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 우수SW시상 수상경력
- 대상기업 선정방법
 -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가기준을 제시한 후 대상기업 공모

기타 (인증제도 · 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지식경제부 SW진흥과 (02-2110-4781)

17. MICE · 융합관광

17-1) MICE

17-2) 생태관광

□ 개념

Meetings(회의), Incentives(보상관광·행사),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s(전시회)
유치·개최 관련산업

□ 대표품목

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기획서비스업, 국제회의장치사업, 국제회의공연이벤트업, 국제회의시설업,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업, 전시시설사업, 전시주최사업, 전시장치사업, 전시용역사업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C18111(경인채업), H49100(철도운송업), H49211(도시철도운송업), H49232(전세버스운송업), H50111(외항여객운송업), H51100(정기 항공 운송업), H51200(부정기 항공 운송업), I55111(호텔업), I55112(여관업), I55133(휴양콘도 운영업), I55909(그외 기타 숙박업), I56(음식점 및 주점업), 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L68112(비주거용건물 임대업), L69110(자동차 임대업), L69320(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K65121(금융 및 보험업), M71310(광고 대행업), M71391(옥외 및 전시광고업), M71393(광고물 작성업), M73301(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M73902(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N75120(인력고용업), N75211(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N75212(국내여행사업), N75290(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N75310(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911(문서 작성업), N75912(복사업), N75919(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2(전시 및 행사대행업), S94990(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P90110(공연시설 운영업), P90121(연극단체), P90122(무용 및 음악단체), P90123(기타공연단체), P90131(공연예술가), P90132(비공연예술가), P90191(공연기획업), P90192(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R91121(골프장운영업), R91229(기타 오락장 운영업)

○ 관광산업특수분류

F41121(상업시설건설업 : 호텔, 식당, 소매점 등), P85301(호텔·관광관련 전문대학), P85302(호텔·관광관련 대학교), R94110(관광산업 관련 산업단체), R94120(관광관련 전문가단체), R94990(그외 기타협회 및 단체)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해당업종 : MICE 유치·개최 관련기업
 - 시설 : 국제회의시설업(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전시시설사업, 전시장치사업, 호텔업
 - 기획 : 국제회의기획업(PCO), 여행업, 전시주최사업(PEO), 이벤트업
 - 기타 : 전시용역사업, 기타 MICE관련 연구실적 보유 기업
-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법률상 전문회의시설·준회의시설로 등록한 시설
- * MICE 주요국은 컨벤션센터를 공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로 인식하여 재산세, 법인세 등 일체의 세금을 감면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02-3704-9772)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과 (02-3704-9742)

□ 개념

자연자원의 보전이 곧 지역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의미있는 여행 (세계생태관광협회)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E3900(환경정화 및 복원업), I5511(관광숙박시설 운영업), M72122(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N7430(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N7521(여행사업), R9023(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 평가시 가점 대상 기업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기업
-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기업
- 환경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계획(2009.01)」의 ‘10대 환경 산업육성’ 정책과 관련된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

□ 대상기업 우대시 고려사항(산업육성정책과 연계)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우대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문의처 / 담당자

○ 환경부 생태관광과 (02-2110-6734)